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11-09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법령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Broadcasting Law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Programs)

2011. 12.

연구기관 : 법무법인(유)태평양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법령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총괄책임자 : 오양호 변호사

참여연구원 : 류광현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박준용 변호사

윤주호 변호사

이용희 변호사

이준민 변호사

강태욱 변호사

박정은 변호사

목 차

요약문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대상 ····· 1

제2장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 2
제1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 2
1. 제도 개선 배경 ····· 2
2. 보편적시청권 정의 개정(안 제2조제25호) ····· 2
3. 사전 보호장치 신설 → 중계 가능 방송사 사전 지정 및 관리 ····· 3
4. 사후장치 강화 → 금지행위 상향입법 및 구체화(안 제76조의3) ····· 4
5. 시청권 보호 강화 → 금지행위 추가·신설(안 제76조의3) ····· 5
제2절 해외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현황 ····· 7
제3절 방송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9
1. 검토 1 (보편적시청권 개선) 방송법령 개정(안) ····· 9
2. 검토 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 개정안 ····· 31
3. 검토 3 방송법 신・구조문대비표 ····· 38
4. 검토 4-금지행위 중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방안 48
5. 검토 5-중계가능방송사업자의 사전 지정 관련 방송법령안 및 규칙안 ····· 49
제4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51
제5절 관련 규칙안 제정안 ····· 54
제6절 최종 입법예고안 및 의결안 ····· 55

제3장 협찬고지 및 간접광고, 외주제작사 관련 제도 개선 ····· 61
제1절 연구의 배경 ····· 61
제2절 방송법 개정안 및 개정취지 ····· 61
1. 제도 개선의 방향 및 전체 개정 취지 ····· 61
2. 방송사업자 의견 반영 수정안 검토 ····· 72

제3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사업자 의견 검토 ····· 78
1. 지상파 방송사 의견 검토 ····· 78
2.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검토 ····· 87
3. 외주제작사 의견 검토 ····· 88
제4절 간접광고 및 협찬거래 신고제 개정안 ····· 89
1. 개정안 마련의 취지 ····· 89
2. 개정안 및 의견 ····· 89
제5절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 91
1. 전광판방송사업자 관련 ····· 91
2.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관련 ····· 92
제6절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해석 관련 자문에 대한 검토 의견 ····· 93
1. 방송법령 상 협찬 대상인 시상품 또는 경품의 범위 ····· 93
2. 방송법 시행령 개정 후, 협찬고지 규칙 개정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검토 ··· 95
3. 편성고시 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관련 외주제작사 범위 한정의 위법 여부 검토 ····· 99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과징금·과태료 제도 관련 법령 개선안 ····· 105
제1절 연구의 배경 ····· 105
제2절 협찬고지 관련 규칙 심의권 및 제·개정권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의견 ····· 106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05
2. 개정취지 ····· 105
제3절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 107
1. 방송법 ····· 107
2. 방통위 설치법 ····· 128
제4절 심의책임자 고지 관련 법령 개정안 ····· 135
1. 개정안 취지 ····· 135
2. 주요 내용 ····· 135
3. 신구조문 대조표 ····· 135
제5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범위 관련 검토 ····· 136

1. 검토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 136
2. 검토의견 ····· 137

요 약 문

1. 제목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법령 개선방안 연구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며,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전반을 검토하고, 방송법령의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보편적 시청권, 협찬고지, 간접광고, 외주제작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법상 과징금 및 과태료 제도와 관련한 분야를 중심으로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전반, 기타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여야 하는 고시 또는 규칙의 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방송법령 및 기타 법령 개정안, 고시 제정안이다.

가. 보편적 시청권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중계 가능 방송사를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입법하고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행위를 추가·신설하면서, 그 내용을 시행령으

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개정안을 도출하고, 관련 고시 또는 규칙안을 마련하였다.

나. 협찬고지, 간접광고 및 외주제작사

그 동안 외주제작사에게만 제작협찬을 허용함으로써 외주제작사에 대한 지원책으로 존재해 왔던 협찬을 방송사업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제작재원 조달 수단으로 인정하고, 방송 제작 실무 상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간접광고와의 관계를 명확화 하며, 외주제작사를 방송법 상 주체로 입법함으로써, 외주제작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송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법 상 과징금·과태료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모호하게 규정된 규정들을 정비하고, 방송심의 등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의 권한 및 절차 관련 규정을 명확하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론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법령 개정안은 실제 법령 개정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 및 협찬고지, 간접광고, 외주제작사와 관련한 법령 중 일부는 이미 입법예고 되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방송법령 개정안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방송법에서 외주제작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협찬, 간접광고 등을 통해 방송법 상 주체들이 제작 재원을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제작환경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Summary

1. Subject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Broadcasting Law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programs

2. Objectivenes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carry out a comprehensive review of Broadcasting Laws and formulate draft bills to improve such laws in the direction of adapting to new broadcasting environments, ensuring the people's viewing rights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programs.

3. Composition and scope of the study

Largely focusing on universal access rights, sponsorship, product placement,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and systems relating to penalty surch arges and fine for negligence under the Broadcasting Act (the"**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up detailed draft bills with respect to the Act,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and other relevant laws and to suggest draft public notice or rules to bee stablished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4. Content and result of the study

The content and result of the study are draft bills of broadcasting and other laws and draft public notices that have been ultimately derived.

A. Universal Access Rights

The study formulated draft bills of the Act, draft public notices or regulations to the following effect: (i) universal access rights are defined as "the rights for the general public to view sports games in which people have a really great interest as well as other major events **without paying additional fees**."; (ii) broadcasting companies that may relay such games and events may be designated and managed beforehand; (iii) prohibited activities relating to universal access rights, which were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re to be prescribed at a higher level, i.e. in the Act;and (iv) new and additional prohibited activities to enhance access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details thereof are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B. Sponsorship, Product Placement and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The study formulated a draft bill of the Act that (i) recognizes sponsorship of production, which has been allowed only for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so far and thereby served as a measure to support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as a reasonable means to finance production by allowing sponsorship for broadcasters; (ii)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nsorship and product placement, which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in the practice of broadcasting production; and (iii) enhances the rights of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and imposes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on them by legislating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as entities under the Act.

C. KCSC and the system relating to penalty surcharge and fine for negligence under the Act

Annotations on relevant provisions and draft bills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CC" have been prepared to amend provisions that prescribed the authorities of KCSC and KCC ambiguously and to clarify provisions relating to the authorities and

procedures that impose penalty surcharges and fine for negligence according to deliberation on broadcasts, etc.

5. Use in policies

Draft bill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actual draft bills, some of which relating to universal access rights, sponsorship, product placement and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have already been announced for legislation or introduced through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6. Expected benefits

The draft bills of the Act derived from this study is expected to build a foundation for a production environment that can enhance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programs by (i) securing the viewing rights of viewers to a broader extent; (ii) recognizing the status of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under the Act; and (iii) enabling entities under the Act to finance their production through sponsorship and product placement, etc.

Table of Contents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Part 1 Necessity and purposes of the study
Part 2 Subject of the study

Chapter 2 Improvement of System of Universal Access Right

Part 1 Major points in system improvement
1. Background of the study
2. Revision of definition of universal access right (Proposal Article 2 Item 25)
3. Creation of prior protective measures → Pri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broadcasters allowed to relay broadcasts
4. Strengthened ex-post facto measures → Specifying prohibited acts in higher legislation and giving details (Proposal Article 76-3)
5. Stronger protection of access right → Addition and creation of prohibited acts (Proposal Article 76-3)
Part 2 Systems currently adopted in foreign countries to ensure universal access right
Part 3 Review and opinion regarding proposed amendment to broadcasting laws
1. Review 1 (Proposed) amendment to broadcasting laws (for improvement of universal access right)
2. Review 2 Proposed amendment to regulations relating to universal access right..31
3. Review 3 Comparison between old and new provisions of the Broadcasting Act.38
4. Review 4 – Measures to make specific "act to impose additional charge" out of prohibited acts in the Enforcement Decree
5. Review 5 – Proposed broadcasting laws and rules regarding prior designation of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allowed to relay broadcasts
Part 4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Part 5 Proposed related rules
Part 6 Final version of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resolution

Chapter 3 Improvement of Systems Regarding Sponsorship, Product Placement and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Part 1 Background of the study
Part 2 Proposed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and purpose of amendment
1.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ystem and the overall purpose of amendment
2. Review of proposed amendment reflecting opinions of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Part 3 Review of opinions from related business operators regarding proposed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1. Review of opinion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2. Review of opinions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3. Review of opinions of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Part 4 Proposed change of the system of allowing product placement and sponsorship transacactions through reporting
1. Purpose of proposed amendment
2. Proposed amendment and opinions
Part 5 Review of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regarding non-commercial public interest advertisements
1. With respect to electric sign board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2. With respect to concept of non-commercial public interest advertisements
Part 6 Opinion and review regard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quest for advice on interpretation of other laws
1. Scope of prizes or gifts provided under sponsorship under broadcasting laws
2. Review regarding imposition of fine on acts done prior to revision of rules on Spon-

sorship after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3. Review for illegality of limiting the scope of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with respect to the standard of recognizing externally produced broadcasting programs in the announcement of programming

Chapter 4 Proposals to Revise Laws Regarding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the System to Impose Fine/Penalty

Part 1 Background of the study
Part 2 Opinion and review regarding proposed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ith respect to the rights to review, enact or revise rules on sponsorship
1. Proposed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 Purpose of amendment
Part 3 Review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ith respect to dutie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1. Broadcasting Act
2.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art 4 Proposed amendment to laws regarding announcement of person in charge of deliberation
1. Purpose of proposed amendment
2. Major matters
3. Comparison between old and new laws
Part 5 Review of scope of dutie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1. Background of review and points of questions
2. Review and opin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 방송환경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출범, IPTV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의 출현, 스마트 시대의 도래 및 방송·통신 융합 경향 등으로 인하여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방송법령은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전제로 각 방송 관련 주체들을 규율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방송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관련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원활하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편, 그 가운데에서도 방송 프로그램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 현재 방송법령 가운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청자의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방송법령의 개정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방송법령 개정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또는 규칙안 등의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아래 세 가지 분야와 관련한 방송법령 전반이다.

가. 보편적 시청권
나. 협찬고지, 간접광고, 외주제작사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및 방송법 상 과징금·과태료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작업에서 단계적으로 연구된 내용 및 해당 영역 관련 방송사업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개정안을 확인하기로 한다.

제2장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제1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1. 제도 개선 배경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2007. 1.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이다.

그런데 2010. 6.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중계 당시 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단독중계를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 규정이 불충분하고, 국민관심행사의 범위가 구체화되지 못하였다는 점, 가시청가구비율의 충족여부를 사후적으로만 규제함으로써, 이미 해당 행사가 종료한 후에는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방송사업자 사이에 상호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금지행위의 세부규정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 보편적시청권 정의 개정(안 제2조제25호)

○ **(개정사유)** 국민관심행사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방송수단의 범위, 유·무료 여부**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

○ **(개정내용)** 보편적시청권의 정의를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 **기존의 시청수단**에 더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함

현 행	개정안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시청권으로 정의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

3. 사전 보호장치 신설 → 중계 가능 방송사 사전 지정 및 관리

(안 제76조의6 신설, 제108조 개정)

○ **(개정사유)** 현재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인지를 금지행위의 **가시청가구비율 충족여부로 사후 판단**

- 금지행위는 사후적인 수단으로, 방송사업자가 가시청가구비율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

※ '10년 SBS의 올림픽·월드컵 단독중계시 타 방송사가 SBS의 가시청가구비율이 90/100 이상인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 발생

○ **(개정내용)** 방송커버리지 논란을 불식하고 가시청가구비율 충족여부 확인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와 방통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계 가능 방송사업자의 요건을 규정**,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고시**

- 지정 요건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신고

- 중계방송권 계약시 그 내용과 국민관심행사의 방송계획안을 제출토록 함

- 신고 및 자료제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 조항 신설

현 행	개정안
< 신 설 >	o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등(제76조의6)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방송사업자를 국민관심행사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 지정ㆍ고시 - 방송사업자는 방통위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요건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재지정 하도록 함 -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중계방송권 계약 내용과 방송계획안 등의 제출의무 부과
< 신 설 >	o 과태료 부과 유형 추가(제108조) - 사전지정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사후장치 강화 → 금지행위 상향입법 및 구체화(안 제76조의3)

○ (개정사유) 금지행위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서 법의 **예측가능성** 측면과 **타법 선례**에 따라 **상향입법 필요**

※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의 금지행위 유형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60/100~75/100에서(올림픽, FIFA 월드컵은 90/100 이상)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ㆍ구매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개정내용) 시행령의 금지행위를 **법 제76조의3제1항각호로 상향입법**하고,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함

5. 시청권 보호 강화 → 금지행위 추가 · 신설(안 제76조의3)

○ (개정사유) 신설되는 **중계 가능 방송사업자의 사전 지정**제도 등과 기존 **순차편성 권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지행위 신설 필요

○ (개정내용) 다음의 사항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청가구비율**이상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중계방송권자가 사전 지정된 방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나 이상의 사전 지정** 방송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방송의 공공성, 채널선택권 보호 측면에서 국민관심행사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는 행위

※ 방송법 시행령에서 국민관심행사 기간중 전체 방송시간의 50/100 이하로 편성하도록 규정

※ '08년 베이징올림픽(특집 포함) : KBS2 32.4%(37.0%), MBC 34.4%(46.2%), SBS 35.2%(47.5%)
'10년 남아공월드컵 기간 중 SBS의 중계방송 편성비율 : 40.8%(44.4%)

현 행	개정안
o 보편적시청권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	o 보편적시청권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 규정**
< 상향입법 및 개정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청가구비율을 만족하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 신 설 >	-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신 설 >	- 중계방송권자가 사전 지정된 방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나 이상의 사전 지정 방송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 상향입법 >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행위
< 상향입법 >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 상향입법 >	- 정당한 사유 없이 뉴스보도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신 설 >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과 연관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는 행위
< 신 설 >	o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2절 해외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현황

<table>
<tr><th>국가</th><th colspan="2">가시청비율</th><th>유·무료지정</th><th>우선 방송사</th><th>대상행사</th></tr>
<tr><td rowspan="2">영국</td><td>그룹 A</td><td>인구의 95/100 이상</td><td>무료</td><td>BBC1, BBC2, ITV1, Ch4, Five (사전 지정)</td><td rowspan="7">o 대부분의 국가에서동·하계 올림픽 및 FIFA 월드컵 지정

- 월드컵의 경우, 자국대표팀경기, 개막전·준결승 및 결승전을 대상경기로 지정(프랑스, 독일 등)

o 유럽 국가는 대부분 유럽축구선수권대회도 지정

o 일부 국가의 경우 문화행사도 포함

- 여왕 대관식(영국), 산 레모 음악제 (이탈리아) 등</td></tr>
<tr><td>그룹 B</td><td>-</td><td>-</td><td>그룹A 이외의 방송사업자※</td></tr>
<tr><td>독일</td><td colspan="2">인구의 2/3 이상</td><td>-</td><td>ARD, ZDF(공영), RTL (민영)</td></tr>
<tr><td>오스트리아</td><td colspan="2">인구의 70/100 이상</td><td>무료</td><td>ORF(공영)</td></tr>
<tr><td>프랑스</td><td colspan="2">인구의 85/100 이상</td><td>무료</td><td>TF1, France Televisions</td></tr>
<tr><td>이탈리아</td><td colspan="2">인구의 90/100 이상</td><td>무료</td><td>RAI(공영)</td></tr>
<tr><td>호주</td><td colspan="2">공영방송 또는 50/100 이상을 충족하는 상업방송</td><td>무료</td><td>ABC, SBS(공영) 등</td></tr>
</table>

※ A그룹은 전국민 시청이 필요한 경기를(올림픽・월드컵 등), B그룹은 대중적 지명도가 낮은 경기(크리켓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B그룹 행사의 중계방송권자에게 A그룹 방송사업자에 대한 2차 중계권 제공 의무 부여

제3절 방송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검토 1

(보편적시청권 개선) 방송법령 개정(안)

□ 방송법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4.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4. 생략	□ 문제점 o '보편적시청권'의 정의에 유·무료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청권 보호규정으로 미흡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사업자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 싱가폴의 경우 제도가 없어 star hub(케이블), singtel(IPTV)가 남아공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여, 월드컵패키지를 가입자, 비가입자(셋톱 대여) 모두에게 $68.5불(조기 구매시 $51.4)에 판매 ※ 지상파 국영방송인 MediaCorp은 FIFA 승인 하에 4경기(개막전, 준결승, 결승) 중계 □ 해외사례 o 미국, 일본 등 해당 제도 없음 o EU: 시청각미디어지침('10. 3월) article 14 - free TV을 통해 사회의 주요행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시청할 권리를 부여할 조치를 각 국이 취할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추가비용 지불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Note: "추가비용 지불 없이"의 의미는 현재의 상태에서 비용의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이므로, 지상파 방송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종편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현재 개정안 문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현 행	개정안	비고
		수 있음 ※ free television(free-to-air): 수신료, 케이블 기본료 외 추가비용 없이 접근가능한 채널(EU시청각미디어지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문('11.2.17)) o 영국 : 95% 이상의 커버리지와 무료인 방송사가 실시간 중계(Ch4는 Freesat과 Freeview, Five는 2008년 케이블 기본형을 포함하여 자격 획득) o 독일 : 전체가구의 2/3이상, 추가비용 부과도 가능 ※ 80%이상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공영방송 수신 ⇒ 보편적시청권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 '무료'의 의미는 각각의 플랫폼을 수신하는데 드는 기본비용(수신료, 케이블 기본료)를 제외하고, 해당 행사를 시청하는데 추가비용이 부담하지 않음을 의미 □ 개선방안 o 제도 취지상 무료로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의 경우 적어도 하나의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이 90.3%(2010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임을 고려할 필요 * 제17대 국회 문광위에서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 도입 논의시 당초 안(손봉숙 의원안)에서는 '무료 지상파 방송'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매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h>비고</th></tr>
<tr><td></td><td></td><td>
내용이 삭제됨(2006.11월)

- 유럽에서 지상파가 중계방송사로서 포함되는 것은 무료이면서 일정수준의 시청가구수를 확보하는 것이 지상파이지 지상파에 우선권을 부여한 취지는 아님
<table>
<tr><th></th><th>문구</th><th>커버리지 범위</th></tr>
<tr><td>1안</td><td>‘무료’</td><td>지상파 직접 수신</td></tr>
<tr><td>2안</td><td>‘추가비용 지불 없이’*</td><td>(1안)+유료 방송 기본형 상품</td></tr>
<tr><td>3안</td><td>규정 없음(현 방송법)</td><td>(1안)+유료 방송 전 상품</td></tr>
</table>
* 17대 국회 문광위 손봉숙 의원안은 보편적시청권 정의 규정에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문구 삽입

※ 보편적시청권 연구보고서(방통위, ’08.12월)의 서베이

o 국민관심행사를 우선 중계하여야 할 방송사 순위: 지상파+케이블 기본(스포츠포함) 48.4% > 지상파 30.2% > KBS, MBC 19.2% > KBS 단독 10.2%

o ‘추가비용 지불없이’의 개념을 금지행위로 규정

- 현 보편적시청권은 금지행위 준수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 즉 보편적시청권의 핵심인 커버리지, 실시간 중계, 재판매, 뉴스보도(국민의 알권리)를 금지행위로 열거

- 따라서 ‘추가비용 지불없이’ 개념
</td></tr>
</table>

현 행	개정안	비고
		도 금지행위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현행과 같음) ※ 최문순 의원발의 개정안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 방송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 등에 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최문순 의원발의 방송법 개정안 ('10.6.23) 검토 o 동일·유사 방송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으로 거래하라는 가격규제는 시장기능을 원천 차단 - 해당 규정은 국민관심행사 관련 중계권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에 모두에 적용되어 부작용 심각 - 중계권과 관련하여서는 제3항에 규정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Note: 제76조의3 제1항 금지행위 관련 comment 참조]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추가)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te: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에 부가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제점 o 국민관심행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계될 경우 보다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 보편적시청권의 취지에 맞아 중계권 재판매의 활성화 필요 - 단,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재판매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 □ 현황

현 행	개정안	비고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보편적 시청권에서 비용 측면의 문제를 본 규정의 핵심으로 볼 경우), 또는 "대다수의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보편적 시청권에서 coverage의 문제를 본 규정의 핵심으로 볼 경우)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재판매 등의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후단의 대통령령에 어떠한 기준이 정하여 질지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한편 **중계방송권의 제공**에 중계방송 자체의 재송신이 포함되는지 문제되나, 개념상 중계방송권의 제공에 재송신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재송신 대가의 인상 금지는 금지행위 등에서 규정함으로써 양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 하에 오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공"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보일 수 있으므로, "판매"로 표현을 명확히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최문순 의원발의 개정안	o 작년 남아공월드컵 한국경기의 도달률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를 시청했음을 보임 (월드컵 중계방송의 시청행태와 선택다양성 연구, AGB닐슨, 10.8월) □ 개선방안 : 시행령에 세부기준 마련(p 13) ※ 최문순의원 개정안의 가격상한제는 시장질서에 과도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 검토 필요 < 가격상한제 검토 > o 방송사가 중계 시 재판매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할 가능성 낮음, 남아공월드컵의 경우 총계약금은 880억원, 재판매금액 110억원 o 또한, 스포츠에이전시의 중계권획득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본권 본질적 침해(공정위) - 자체 방송수단이 없는 스포츠에이전시에게 재판매를 통한 이윤획득을 불허하는 것은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며, 방송사업자와 부당한 차별 발생

현 행	개정안	비고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은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문제점 o 방송법 §76조의3①에 근거하여 금지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금지행위는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규정으로 법체계상 법률에 규정할 필요 - 現 방송법시행령 §60조의3의 금지행위 4개 유형 :

현 행	개정안	비고
	[Note: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금지행위 규정(제85조의2)과 관련하여, 다음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방송법 개정안 금지행위 규정에 76조의3 제2항 내지 제5항과 같은 수준의 벌칙 및 절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76조의3 제2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이 개정안 제85조의2 제2항 이하로 포함되어야 함)** 하에, **76조의3 삭제**하고, 본 개정안 제1항의 금지행위 내용을 제85조의2의 한 호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규정하고, **본 개정안 제1항 각 호를 85조의2 제X항 각 목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①방송수단 미확보, ②실시간 방송 불이행, ③중계권 판매·구매 거부·지연, ④자료화면 미제공 ※ 민주당 최문순 의원발의 방송법 개정안('10.6.23)도 금지행위 규정을 상향 입법 □ 개선방안 o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과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1호 개정/이동 >	**(1안) : 90% 단일안** 1. 중계방송권자 등으로서 국민 전체 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추가비용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1안의 경우 국민관심행사 조정 고려 **(2안) : 현행 규정 유지** 2.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전체 가구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추가비용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Note: 우선 2안의 주체를 "중계방송권자등"으로 하여야 하고, "~비율 이	□ 문제점 o 현행 법령은 올림픽·월드컵은 90%, 야구WBC·아시안게임·축구A매치는 75% 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데, - 이는 당초 (구)방송위의 90% 단일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리된 것이나, 지난 3년간의 정책집행 결과 비율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며 해외에서도 비율을 구분한 국가가 없음 □ 해외 사례 o 2가지 기준으로 비율을 구분한 국가 없음 - 영국: 95%, 프랑스: 85%, 이탈리아: 90%, 호주: 공영방송 or 인구의 50%, 독일: 인구의 2/3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h>비고</th></tr>
<tr>
<td></td>
<td>
상의 가구가 <u>국민관심행사등을</u> 추가비용 부담 없이~"로 수정되어야 함.

2안과 관련하여, 올림픽, 월드컵을 법 차원에서 명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음.

1) 우선 <u>법문 자체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국민관심행사에 당연 포함되어야 하는 행사로 열거</u>하고 이를 인용할 수 있음.

이 경우 <u>제76조 제2항</u>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u>올림픽 및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을 포함한</u>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이와 같이 수정될 경우, 올림픽과 월드컵은 반드시 국민관심행사에 포함되는 것이 되며,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올림픽, 월드컵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가능해 짐.

2) <u>올림픽,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등의 표현을 삭제</u>하여야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제76조 제2항에서 국민관심행사를 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률 단계에서 국민관심행사의 구체적 명칭이 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월드컵, 올림픽의 가시청비율을 높이는 것은 고시를 통해 규정하게
</td>
<td>
※ 영국은 A그룹과 B그룹으로 국민관심행사를 구분하여 A그룹에 가시청가구비율(95/100)을 규정

<table>
<tr><th colspan="2">A그룹 방송사 (Ch3, Ch4, BBC1, BBC2, Five)</th><th colspan="2">B그룹 방송사 (A그룹 이외의 방송사)</th></tr>
<tr><th>A 리스트</th><th>B 리스트</th><th>A 리스트</th><th>B 리스트</th></tr>
<tr><td>우선적인 독점 중계권</td><td>2차중계권과 하이라이트 중계권 보장</td><td>A그룹 방송사의 정당한 권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리스트 A 중계 불허</td><td>독점 중계권 허가</td></tr>
</table>

□ 개선방안

o 1안) 단일화하여 상향조정, 2안) 현행 규정 유지
3안) 단일화하되 비율 조정

o '추가비용 부담없이'의 개념은 법 제64조의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기본형 채널 수신요금 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취지로 고시에 구체화
</td>
</tr>
</table>

현 행	개정안	비고
	됨. 다만,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현안-60~75% → 예시-70~95%)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방통위 고시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방통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2호 이동 >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o '정당한 사유' 고시에 구체화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3호 이동>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o '정당한 사유' 고시에 구체화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4호 이동>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Note: 1호가 충족될 경우 3호를 적용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1호가 충족되더라도 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중계방송권을 고가에 재판매하여 궁극적으로 시청자에게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대한 비용이 전가되는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책적으로 3항을 존속시키고 각 개별 금지행위 항목의 준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중계방송의 재송신 시 플랫폼에 대한 추가 비용 청구 문제는 금지행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 5호(또는 마목)로 다음과 같이 신설. **5(또는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o '정당한 사유' 고시에 구체화

현 행	개정안	비고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중계방송권자등의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 중계방송권자등이 위 각 사업자에게 중계방송의 동시 재송신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Note: 금지행위를 85조의2로 통합시킬 경우 이하 2항 내지 5항에 대해서도 위치를 이동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추가 수정이 필요함. 이는 향후 제85조의2와 통합 여부 결정 시 제85조의2 개정안 전체 내용 확인 후 반영.]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	□ 문제점 o 제재수단으로 중계방송사가 시정명령을 위반 시 '총 계약금액의 5/10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논란 존재

현 행	개정안	비고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할 수 있다.	※ 남아공월드컵 관련 SBS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10. 7.23): 19.7억(부과한도 1/2 감경액) □ 개선방안 o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과징금이 실효적인 제어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 계약금액의 10/100으로 상향 ※ 민주당 최문순의원 방송법 개정안('10.6.23)도 동일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시행령 제60조의3제2항 이동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ote: 85조의2에 금지행위가 포함될 경우 해당 호 마지막 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각 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세부기준 고시 내용(시장조사과 초안 마련) o §76조의3①에서 1. 방송수단 확보 조사·검증 방안 등, 3. 4. 5의 정당한 사유의 해당 사항
< 신설 >	제76조의6(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사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방송사업자를 국민관심행사 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중계방송권자가 자신의 방송수단 또는 계약 등을 통해 확보하여 시청자가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타 방송사업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	□ 문제점 : 현 사후장치 만으로는 국민의 시청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없음 o 現 법령은 금지행위,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사후적 장치만을 통해 중계방송권자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음 o 그러나, 본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 실체는 국민관심행사의 실시간 시청권인데, 보

현 행	개정안	비고
	업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수단을 통해 추가비용 없이 시청이 가능한 가구수의 합계가 국민 전체 가구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전체가구수의 100분의 90이상)일 것 [Note: 1)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용어는 앞서 제76조 제2항을 수정하거나, 위 법문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중계방송권자와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사전고시하는 대상이 중계방송권자인지, 중계방송을 하는 플랫폼을 포함한 중계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인지 명확히 해야 함. 현재 개정안은 사전고시의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한정 하고 있음. 중계방송권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한 자로서 방송사업자가 아닐 수 있고,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자가 아닌 플랫폼을 의미할 수도 있음. 현행 금지행위 규정인 영 제60조의3 제1항 제1호는 중계방송권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기만 하면 될 뿐**, 반드시 방송사업자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장대상인 국민관심행사 방송프로그램(특히 스포츠)은 본래적 특성상 일단 중계된 후에는 이를 보장받지 못한 시청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 ※ '10년 SBS 월드컵 단독중계시 타지상파, 국회등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이, 사후적으로 요건을 검증시 조사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 발생 □ 개선방안 : 사전장치 신설 o 가시청가구비율 충족여부, 행사 중계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 매번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건을 갖춘 방송사를 방통위가 사전에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 행	개정안	비고
	제76조의6(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자 사전 자격인정 고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고시할 수 있다(중계방송권자 사전 자격인정 고시). 1. 추가비용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가구수의 합계가 국민 전체 가구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전체가구수의 100분의 90이상)이 되도록 방송수단을 확보할 것 3) "지정"이라는 표현이 국가가 중계방송권자를 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 4) "방송수단"에 대하여 현행 법 및 영에 특별히 중계방송권자 자신의 수단 및 타방송사업자의 수단을 합한다는 표현이 없고, "방송수단"이라는 표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명시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5) 본 조는 중계방송권자의 사정 인정 고시에 대한 것이므로, 국민관심행사의 지정에 관한 제76조 제2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 개정안과 같이 독립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6) 한편 사전 고시된 중계방송권자에 반드시 지상파방송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현 행	개정안	비고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제도의 취지 상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료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중계방송권자에 지상파방송사를 최소 한 개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일 뿐, 지상파방송사만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므로, 목적의 정당성, 법익균형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생각됨. 다음과 같이 규정 가능. **제2호 하나 이상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자등에 포함될 것** 7) **한편 본 개정안 규정의 의의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요구됨**. 본 규정에 의하면 단지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사전에 인정고시하는 의미 밖에 없고, 이들이 가시청비율을 충족한 방송수단을 계속하여 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전 고시되고 나면,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의 방송수단 미확보에 대한 사후적 제재에서 면책되는 것인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사전인정고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추가 연구 필요.]	
	② 제1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에 고시한 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민관심행사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행사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행사를 묶어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중계권 보유현황(계약서) 2. 중계방송 계획(실시간 포함)	

현 행	개정안	비고
	[Note: 마찬가지로 사전고시의 대상이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인지 중계방송권자인지 명확히 할 필요 있음. 후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 필요. **② 제1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자격인정 고시한 중계방송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민관심행사등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행사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행사를 묶어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중계권 보유현황(계약서)** **2. 중계방송 계획(실시간 포함)]**	
< 신설 >	③ 제1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에 고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 등을 중계하려는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국민관심행사 개최일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Note: 위와 같은 취지로 수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 **③ 제1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계방송권자 사전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국민관심행사등 개최일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 지정한 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Note: 위와 같은 취지로 수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 **④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 문제점 o 작년 월드컵 단독중계 과정에서 방송사간 고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중재역할이 미흡했던 원인 中 중계권 취득 과정에서부터의 전 과정이 방송사 단독으로 이루어져 그 내용을 정부가 알 수 없기 때문인 측면 존재 □ 해외사례 : 영국

현 행	개정안	비고
	부터 중계방송권자 사전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o 방송사업자는 중계권 입찰 전에 Ofcom의 동의를 얻고 국제스포츠 기구와 계약을 맺은 뒤에도 중계방송 권한을 신청 □ 개선방안 o 사전 지정된 방송사가 중계권 취득시 신고 의무 부여

□ 방송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비고
제60조의3(금지행위)는 법 제76조의3으로 상향이동		
< 신설 >	제60조의3(국민관심행사등 공급)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권자 등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하였는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최근에 거래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계방송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추이 2. 시청자 규모를 감안한 광고, 수신료 등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3. 국민관심행사 생중계 시각 또는 요일 4. 중계방송권 제공 기간 5. 시장의 경쟁상황 [Note: 제76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제공"이라는 표현을 "판매"로 명확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해외사례 : 영국 o Ofcom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없는 가격(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price)로 판단하는 기준 - ①해당 행사의 이전 가격, ②이벤트 생중계 시각, ③이벤트 생중계 송신에 따른 예상 수입, 시청자 규모(광고, 협찬, 수신료 예상 수입), ④중계방송권 제공 기간, ⑤시장 경쟁상황
제60조의4(시정조치)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0조의4(시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Note: 금지행위에 관한 85조의2가 신설될 경우, 시정조치 등도 신설 조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이하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 5(자료제출)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60조의 5(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제60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2 * 와 같다.	제60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6조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의3제4항에 따른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설 >	제60조의7(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6조의5 제2항에 따라 국민관심행사 등의 개최 기간 동안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은 30%, 관련 특집방송을 포함하여 50% 이상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Note: 1) 법 제76조의5는 "순차편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규정 내용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또한, 중계방송 편성비율의 제한은 방송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상 특별한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동 규정에 대한 하위 규정으로서 편중 편성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정하지 아니함. 한편, 법 제69조는 편성 일반에 대해 다루고 있어 동 규정에서 중계방송의 편성비율 제한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76조의5에서 다시 편	□ 문제점 o 월드컵 등의 기간에 해당 경기 및 관련 특집 프로그램 등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저해하는 결과 초래(ex. 월드컵 방송사) □ 현황: 중계방송 편성비율(괄호안은 특집 프로 포함) o 독일('06년): KBS2 27.9%(38.5), MBC 37.3%(43.4), SBS 29.0%(46.4) o 남아공(10년): SBS 40.78%(-) ※ 해외의 특집프로 포함 편성비율('06년 독일월드컵) o 독일ZDF: 19.6%, 일본NHK 14.06% ※ 월드컵 기간 중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 독일: SBS 63.12%, MBC 69.59%, KBS2 65.28% - 남아공: SBS 61.33% □ 개선방안 o 행사 기간 중 중계방송 편성비율(관련 특집프로그램 포함) 제한 조항 신설 - 스포츠전문채널 등의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편성비율 초과 가능

현행	개정안	비고
	성과 관련한 조항이 등장하므로, 69조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76조의5에 3항으로 신설하는 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조문의 표제를 "중계방송의 편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2) 한편 "특집방송"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특집방송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정규편성된 프로그램에서 국민관심행사 내용을 다루는 경우 이를 모두 특집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집 프로그램은 새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대신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 등의 개최 기간 동안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은 30%, 관련 특집방송(중계방송 외에 국민관심행사 등의 개최 기간에 국민관심행사등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편성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50%] 이상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비고
	3) 본 편성비율 위반과 관련한 벌칙으로는 **법 제108조 제1항에 호를 신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방송법은 제69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편성비율 위반에 대하여 법 제108조 제1항 제4호를 통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는바,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됨.]	

* **(별표 2의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과징금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 제1항제1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5
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 제1항제2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 제1항제3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3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비고</th></tr>
<tr><td>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한다.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로 한다.</td>
<td>1안) 가구수 상향, 야구WBC 제외, 대상 경기 명확화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하계 올림픽
2.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성인 남성 대상 월드컵 결선(한국팀 출전여부 논의 필요)
3.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4. 축구 A매치(남성)

※ 축구 A매치는 FIFA에 등록된 각 국가의 성인 대표간 경기를 말한다.

2안) 현행 규정 유지, 대상경기 명확화
1. 동・하계 올림픽
2.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성인 남성 대상 월드컵 결선(한국팀 출전여부 논의 필요)
3.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4.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5. 축구 A매치(남성)</td>
<td>□ 문제점 : 보편적시청권 보호 대상 경기 불분명

o 동계 아시안게임 포함여부
o FIFA 월드컵의 경우 연령, 성별 기준 없음
o 한국대표팀 출전 여부

□ 해외사례
<table><tr><th>국가</th><th>자국팀 출전</th><th>남녀 구분</th><th>스포츠외 행사</th></tr><tr><td>영국</td><td>X</td><td>X</td><td>X</td></tr><tr><td>독일</td><td>O</td><td>X</td><td>X</td></tr><tr><td>프랑스</td><td>O</td><td>O</td><td>X</td></tr><tr><td>이탈리아</td><td>O</td><td>X</td><td>산 레모 음악제</td></tr><tr><td>덴마크</td><td>O</td><td>O</td><td>X</td></tr><tr><td>아일랜드</td><td>O</td><td>X</td><td>X</td></tr><tr><td>오스트리아</td><td>O</td><td>O</td><td>신년 음악회 등</td></tr><tr><td>벨기에</td><td>O</td><td>O</td><td>음악제</td></tr><tr><td>핀란드</td><td>O</td><td>X</td><td>X</td></tr><tr><td>호주</td><td>O</td><td>O</td><td>X</td></tr></table>
□ 논의사항(원칙: 국민관심행사 최소화 바람직)

o 개최주기가 불명확(ex.차기대회 2017년)하고, 국민관심도가 떨어지는 동계 아시안게임 불포함
o 2회 대회에 불과하며, 공공성 있는 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야구WBC(미 메이저리그 사무국 주관) 제외여부
o 해외사례에서 보듯 자국팀 출전여부 명시</td></tr>
</table>

2. 검토 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 개정안

현행규정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추가비용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개정취지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를 단순히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만 규정하여, 그 의미가 충분하지 않음. "추가비용 지불 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기 위하여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현재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명확히 할 수 있음.

한편 "추가비용 지불 없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유료매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움. KBS 수신료도 현재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기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란 현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추가비용 부담 없이"의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Note : 다만, 동 규정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정의규정으로서 국민의 주요 행사에 대한 접근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만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 그 구체적인 권리의 실현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여타의 시행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하면 되므로, "추가비용 부담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체계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위 개정취지는 위 문구를 포함한다는 전제에서 작성한 것임.]

현행규정	개정안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이를시청할수있도록 중계방송권을다른방송사업자에게도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차별없이제공하여야하며, 그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한다.

□ 개정취지

방송법 제76조 제4항은 제3항 위반의 경우 방통위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항은 이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제76조 제3항은 단순한 원칙 선언 규정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의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본 규정의 목적을 단순히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일반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규정상 중계권의 차별없는 제공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고시 등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중계방송권자의 방송권 판매에 관한 기준은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으로서, 이에 대하여 상위법의 위임 없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법 상에 위임 근거를 명시해 둘 필요가 있음.

[Note : 중계방송권의 차별없는 제공에 대한 세부기준은 중계방송권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가급적 시행령에 그 기준을 규정해 두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함. 다만, 방송법의 대폭 개정에 따른 반발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 운용을 존중하여, 위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해 두었음]

현행규정	개정안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 등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 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의가구가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을확보하지아니하는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 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 개정취지

금지행위 규정은 불이익처분의 근거 조항이므로, 법률에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수범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행규정은 금지행위의 내용 전체를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해함. 따라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대상이 되는 행사 및 가시청가구 비율 등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나 국민정서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 가능함. 따라서, 수시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법률에 직접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 행사로 올림픽 또는 월드컵 등을 명시하는 것과 해당 행사에 대한 가시청가구 비율을 규정하여 두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방송법상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는 가시청 가구의 비율 범위만을

규정해 두고,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행사의 범위나 해당 행사에 대한 가시청가구 비율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고시로 수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Note: 현행 시행령의 가시청가구 비율을 유지하되, 법률에 "올림픽, 월드컵은 90%"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이 수정함. 재송신 관련 금지행위 규정은 사적 계약의 문제로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하였음. 다만 사전 지정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반드시 중계방송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금지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권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계방송을 위한 플랫폼이 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이와 같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반드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자가 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그 중에서도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한편, 지상파방송사를 방송수단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1호 말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 …….본 호의 방송수단에는 하나 이상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이 포함되어야 함.

금지행위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과 아울러 "방송수단에 하나 이상의 지상파방송사를 포함할 것"을 사전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해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편 방송법 제85조의2로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관한 포괄규정이 입법될 경우, 그 한 항으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규정하고, 위 내용을 입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행규정	개정안
<신설>	제76조의6(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수단 사전인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관심행사등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사전에 인정하여 고시(이하 "사전인정고시")할 수 있다. 1. 자신의 방송수단 또는 계약 등을 통해 확보하여 시청자가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수단을 통해 국민 전체 가구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을 것. 2. 제1호의 방송수단 중에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수단을 포함할 것 ② 중계방송권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정고시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수단을 통해서만 국민관심행사등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또는> ② 중계방송권자등이 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정고시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중계방송할 경우, 제76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전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정고시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제4항의 변경신고 심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⑥ 사전인정의 신청, 심사, 변경신고 및 사전인정취소 절차 등 사전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현행 법은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가시청가구 비율을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사후규제만으로는 국민들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어 가시청가구 비율이 충족되는 방송수단의 확보를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요구됨.

이에 따라 중계방송권의 보유유무와는 별개로, 방송사업자 등이 법이 요구하는 가시청가구 비율을 충족하는 정도의 방송수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심사 받아 해당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Note: 이와 같은 사전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사업자가 연합하여야 커버리지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인정 이후에도 사업자간 연합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실제 중계방송 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과연 현실적으로 사전적인 방송수단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지 문제됨. 또한, 사전인정을 받은 사업자만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방송사업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입법에 대하여 현실적인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며 위헌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안으로 사전인정 받은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금지행위 제1호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사후규제와 사전규제를

모두 규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경우 인정고시를 받지 않더라도 중계방송이 가능하므로 사전인정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한편,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는데, 사전인정 신청 기간을 국민관심행사 개최 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심사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증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현행규정	개정안
시행령 <신설>	시행령 제60조의3(국민관심행사등 중계방송권의 제공)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권자 등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최근에 거래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계방송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추이 2. 시청자 규모를 감안한 광고, 수신료 등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3. 국민관심행사 실시간 중계 시각 및 요일 4. 중계방송권 제공 기간 5. 시장의 경쟁상황

□ 개정취지

법 제76조 제3항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방통위 신고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예정하고 있는 행위준칙이므로, 금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임.

현행규정	개정안
시행령 <신설>	시행령 제60조의7(국민관심행사등 중계방송수단 사전인정 등) ①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사전인정을 신청하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 개최 X월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하 심사절차 등 규정 필요, 일부 시행규칙 또는 고시 위임 가능

[Note: 방송법 개정안의 중계방송수단 확보 사업자 사전인정 부분과 함께 추가 연구 및 보완 필요함]

3. 검토 3

방송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4. (생략)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24. (현행과 같음)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Note: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안, "일반국민이 이를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으로 문구를 추가하는 안은 폐기된 것인지 확인 요.]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1호 개정/이동 > < 신 설 > < 신 설 > <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2호 이동 > <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3호 이동 > <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4호 이동 >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Note: 제1호의 위임방법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에 관한 Note를 참고 바람. 위 규정은 SO가 중계방송권 취득하는 경우를 포괄하기 어려움.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SO등이 재송신함으로써, SO를 "방송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SO 등이 중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상파방송사를 통해 중계방송을 하게 된다면, 과연 지상파방송사를 단순히 SO의 방송수단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어떤 중계방송권자가 그가 확보한 방송수단만으로는 가시청가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나, 중계방송권의 재판매를 통하여, 다른 중계방송권자가 그의 방송수단으로 중계방송을 하여 합산 시 가시청가구 비율을 충족하게 되었을 경우, 각각의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수단 확보만으로는 가시청가구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를 통

< 신 설 >	하여 결국 가시청가구 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이 됨. 중계방송권자가 방송사업자에만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시청가구 비율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단지 방송수단을 확보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안을 제안함. "1. 중계방송권자로서 추가적인 방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자로서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Note : 중계방송권자가 아닌 방송사업자도 국민관심행사의 시청과 관련하여 추가 요금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올림픽을 방송하는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케이블사업자), "중계방송권자로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 중 하나 이상을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Note : 현재 조항은 주어가 빠져 있음. 누가 중계방송권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문구 필요. 한편, 본 조항은 제76조의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중계방송권을 취득하거나, 중계방송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사전지정된 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권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사전지정된 방송사업자가 SO연합이라고 가정할 경우, 굳이 중계방송권자가 되지 않더라도, 단지 중계방송권자의 중계방송을 송출하는 플랫폼의 역할만

	을 할 수도 있음. 이런 경우 이들을 반드시 중계방송권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물론, 방통위가 구상하는 안은 지상파 3사가 중계방송권자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 있으나, 법률규정은 추상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비록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함. "중계방송권자로서, 제76조의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 중 하나 이상을 통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중계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Note: 제1호를 수정할 경우,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함.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확보한 모든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과 연관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② (현행과 같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시행령 제60조의3제2항 개정/이동 >	⑥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	제76조의6(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방송사업자를 국민관심행사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ote : 시행령 개정안 제60조의7에 의하면, 지정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법 개정안 제108조는 이 때 제출하는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렇다면, 지정은 방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함. 또한 신청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규정이 필요함. 따라서 위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안을 제안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방송사업자를 국민관심행사 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요건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신청, 제3항의 변경신고 및 제4항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는 지정요건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변동사항 ~~요건~~을 심사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Note: 제1항 수정 시 본 항은 제3항이 됨]
<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 계약시 계약 내용과 방송계획안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Note: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위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위 제1항 Note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항을 통해 절차와 관련하여 일괄 규정하는 안을 제안함. 마찬가지로 제1항을 수정하면, 본 항은 제4항이 됨.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 계약시 계약 내용과 방송계획안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1의2. (생략) < 신 설 >	1.~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제76조의6제1항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신 설 >	[Note: 제76조의6 제1항 수정 시 신청 시 자료제출의무는 제76조의6 제2항에서 부과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거짓으로 제76조의6제2항의 자료를 제출한 자"] 11의4. 제76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Note: 제76조의6제1항 수정 시 제3항, 제4항이 됨.]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60조의3(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시청가구비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제60조의3(금지행위) ①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의 경우,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 제76조의3제1항제3 4호의 금지행위의 경우 가. 재난방송을 편성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방송송출이 중단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 제76조의3제1항제4 5호의 금지행위의 경우 가. 중계방송권자등이 중계방송권을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구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받았으나 정당

현 행	개정안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나.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자로부터 구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다. 중계방송권의 구매가격을 예상 중계수입에 비추어 현저히 높거나 낮게 제시하는 행위 라. 부당하게 계약의 일방을 차별하거나 일방이 원하지 않는 다른 상품의 구매를 요구하는 등 기타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4. 법 제76조의3제1항제5 6호의 금지행위의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뉴스보도나 해설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분량의 자료화면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용 화면구성에 적합한 수준의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5. 법 제76조의3제1항제6 7호의 금지행위의 경우, 행사기간 중 국민관심행사등의 방송프로그램(국민관심행사등과 관련한 특집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편성하는 행위
② 세부기준은 고시에 위임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ote:

법 제7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가시청가구 비율의 위임 방법으로, 법률에서는 비율의 범위 및 비율 설정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안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보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입법기술상 기술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고시로 바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시청가구 비율도 법-시행령-고시 순으로 순차 재위임하면서 동일한 규정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기술적 규정의 경우 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직접 위임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예를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6항 등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방송법도 제76조 제2항 등에서 고시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은 규정 방식을 택할 경우 법률에서 가시청가구 비율의 범위를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포괄위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상 대략의 범위를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함.

법 제76조의3 제1항 제1호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영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의 경우, 중계방송권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한편, 제1항 제5호의 경우 특집프로그램이 무엇인지(즉, 국민관심행사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특집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는바, 이에 관한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제60조의7(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 사 지정 등) ① 법 제76조의6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수단 또는 계약 등을 통해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할 것 2. 제1호를 충족함에 있어,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을 것

현 행	개정안
	(안) 2. 일반 국민에게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요건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방송송출현황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ote: 제1항 제1호의 경우 법 - 고시로 위임하는 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 제76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규정하여야 함.

제2항은 법 제76조의6 제1항 수정안의 내용과 같으므로, 삭제가능]

4. 검토 4 - 금지행위 중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방안

(시행령안)

시행령 제60조의3(금지행위) ①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호의 금지행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을 통한 국민관심행사등 시청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고시안 예시)

가. 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 등이 개최되는 기간에 국민관심행사 등이 중계방송되는 채널을 기본형 상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나. 방송사업자가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이 중계방송되는 기간에 국민관심행사가 중계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 방송상품의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행위

위 고시안 예시 외에도, 중계방송권자인 지상파방송사가 SO 등에게 동시재송신 시 과다한 대가를 요구하여 결국 SO 등이 상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용이 시청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음(이에 관해서는 이전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재송신대

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켰었으나, 현재 안에서는 삭제됨). 그러나 재송신 대가를 전혀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무리가 있고, "과다한 대가", "비용의 전가" 등은 개념도 명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실제로 방송사업자 사이의 대가 수수 규모가 크면, 궁극적으로 시청자에게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5. 검토 5 - 중계가능방송사업자의 사전 지정 관련 방송법령안 및 규칙안

법 제76조의6(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하 "지정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방송사업자를 국민관심행사 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요건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는 지정요건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변경사항을 심사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내용과 방송계획안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신청, 제3항의 변경신고 및 제4항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0조의7(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 사 지정 등) 법 제76조의6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로서 본인이 소유하거나 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다른 방송사업자의방송수단을 통해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출 것
2. 시청자가 제1호에 의한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시청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사업자 사전 지정에 관한 규칙(안)

(목적) 법 제76조의6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사업자 사전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규율하기 위함.

(신청)

1.별지 X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2.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가. 방송송출현황

나. …

다. …

(신청기간)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X월 전부터 X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지정기간) 방통위는 신청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국민관심행사 등이 개최되기 X월 전까지 사전지정 방송사업자를 고시하여야 함.

(변경신고)

1.시행령 제60조의7 각 호의 요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X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함.

2. 변경신고서에 해당 요건과 관련한 신청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재심사 및 지정취소) 방통위는 변경요건을 재심사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취소 여부를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중계방송권 계약 자료 제출) 중계방송 가능 방송사업자로 사전지정된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계약서 또는 계약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2. 방송계획안

3. …

제4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영 제60조의3 (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경우,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 전체가구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때 확보된 방송수단은 중계방송권자 본인이 보유한 방송수단 외에 타인이 보유한 방송수단 가운데 계약에 의하여 중계방송권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 방송수단을 포함한다.

2. 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 등이 중계방송되는 채널을 기본형 상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기 위하여 국민관심행사 등이 중계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 방송상품의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행위

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 등이 중계방송되는 지상파방송 채널을 동시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에게 그 재송신의 대가로 기존의 재송신 대가 이외에 추가적인 금원 또는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행위

3. 법 제76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천재지변에 의하여 방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재난방송을 편성하게 된 경우

다. 법원의 결정, 판결 또는 국가기관의 명령으로 인하여 방송송출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국민관심행사 등의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법 제76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상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예상 중계수입에 비추어 현저히 높거나 낮게 제시하는 행위

다.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 시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자 등이 중계 방송권의 가격 기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중계방송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들을 차별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부당하게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5. 법 제76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저히 불충분한 분량의 자료화면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방송에 적합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방송용 화면을 구성할 수 없는 수준의 자료화면만을 제공하는 행위

다. 국민관심행사 등의 내용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부당하게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하는 행위

6. 법 제76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경우, 행사기간 중 국민관심행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하는 행위. 이 때 국민관심행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은 국민관심행사 등을 방송하는 프로그램 외에 국민관심행사 등과 관련한 특집프로그램 등(행사기간 이전에 정규편성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에서 국민관심행사 등을 소재로 다루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ote: 만약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방송법 개정안의 금지행위 규정을 영 제60조의3 제1항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고 규정하여, 현재 제1항의 내용을 별표의 내용으로 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이 모두 법에 금지행위의 일반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형태가 체계상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금지행위 일반규정이 방송법 시행령에 있어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제1항의 내용을 제2항에 따라 모두 고시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영 제60조의7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등)

① 법 제76조의6 제1항에 따라 국민관심행사 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로서 자신이 보유한 방송수단 및 계약 등을 통해 확보한 타인의 방송수단을 합하여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할 것2.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중계방송 시청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관련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Note: 이와 같은 절차 규정을 방통위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바, 당초 본 법무법인이 귀 위원회에 제안한 안에는 법 제76조의6 제5항으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이미 방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시행령에 포함시켜 방통위 규칙 제정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모두 규율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아닌 IPTV가 규율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IPTV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제5절 관련 규칙안 제정안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 (목적)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 제76조의6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이하 '중계가능 사업자') 사전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중계가능사업자로 사전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민관심행사 등이 개최되기 [ ]월 전부터 [ ]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 제60조의7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60조의7 제1항 제1호의 경우, 방송송출현황, 방송수단 보유 현황 및 타인의 방송수단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나. 영 제60조의7 제1항 제2호의 경우, 중계방송 관련 예산, 중계방송 취득 비용 충당 계획서 및 시청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등

제3조 (지정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2조의 서류를 심사하여 국민관심행사 등이 개최되기 [ ]월 전까지 중계가능사업자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신고)

① 신청자는 영 제60조의7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의 경우 변경신고서에 제2조 제2호 각 목의 서류 중 변경 요건과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심사 및 지정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요건을 재심사하여, 변경신고를 한 신청자에게 중계가능사업자 사전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중계가능사업자 사전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절 최종 입법예고안 및 의결안

입법예고안 · 의결안 대비표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의 결 안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用語의 定義) ----------.	第2條(用語의 定義)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외주제작사"라 함은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17의2. "외주제작사"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8. ~ 24. (생 략)	18. ~ 24. (현행과 같음)	18. ~ 24. (현행과 같음)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5. ----------국민이 추가비용 부담없이 ----------.	<입법예고안과 같음>
第13條(缺格事由) ①·② (생 략)	第13條(缺格事由) ①·② (현행과 같음)	第13條(缺格事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③----------	<입법예고안과 같음>

者는 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 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第10項 및 第11項----------.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방송채널사용사업----------.	<입법예고안과 같음>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	<입법예고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72條(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중 國內에서 당해 放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第72條(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 외주제작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73條(放送廣告등) ① (생 략)	第73條(放送廣告등) ① (현행과 같음)	第73條(放送廣告등) ① (현행과 같음)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7. ---------- 상품, 서비스 등----------	<입법예고안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간접광고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⑥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예고안과 같음>
<신 설>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비용 부담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고시된 방송사업자를 하나 이상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신 설>	2.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	<삭제>

	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신 설>	3. 중계방송권자가 제76조의6 제1항에 따른 사전 지정 방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나 이상의 사전 지정 방송사업자를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삭제>
<신 설>	4.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입법예고안과 같음>
<신 설>	5.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입법예고안과 같음>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과 연관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는 행위	5.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과 연관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제1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예고안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6(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방송사업자를 국민관심행사등을 중계방송	제76조의6(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고시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방송사업자를 국민관심행사등을 중계방송 할 수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요건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는 지정요건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건을 심사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 계약시 계약 내용과 방송계획안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있는 방송사업자로 확인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요건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고시된 방송사업자는 요건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건을 심사하여 다시 고시할 수 있다. <삭제>
第98條(資料提出) ①政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98條(資料提出) ①----------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傳送網事業者 또는 외주제작사----------.	<입법예고안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100條(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光板放送事業者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視聽者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외주제작사----------. ----------	<입법예고안과 같음>

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08條(過怠料) ①----------.	第108條(過怠料) ①----------.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제76조의6제2항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1의3. 제76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면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11의4. 제76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1의4. 제7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2. ~ 27. (생 략)	12. ~ 27. (현행과 같음)	12.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협찬고지 및 간접광고, 외주제작사 관련 제도 개선

제1절 연구의 배경

방송법 제74조는 협찬고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협찬고지의 범위를 모두 위임하고 있다. 협찬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 방송법 시행령 제60조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작협찬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외주제작사만 제작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주제작사의 보호규정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간접광고가 입법되기 전 협찬은 탈법적 간접광고로 기능함으로써, 그 거래규모나 구조 등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작협찬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간접광고와 협찬이 각각 제 기능을 갖도록 하며, 그 동안 협찬규제를 비대칭적으로 함으로써 보호하였던 외주제작사를 방송법상 주체로 등장시켜, 다른 방식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방송법령의 개정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개정의 일환으로 2011. 8. 19. 방송법 시행령 제60조가 개정되어 지상파 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제작협찬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등 방송법령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방송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하게 진행된 연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2절 방송법 개정안 및 개정취지

1. 제도 개선의 방향 및 전체 개정 취지

가. 목적: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 기반과 상호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마련하여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나. 개정취지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기반을 강화하고,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며, 방송시장에 공정한 거래환경을 정착시키고자 함.

공익성 대형 기획 프로그램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던 방송사에 대한 제작 협찬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주제작사가 상품배치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제작 주체들의 재정기반을 확충하여 제작역량 강화를 도모함.

또한 방송프로그램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주제작사에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방송법의 규율 범위 내로 포섭함. 아울러, 외주제작물의 인정기준, 외주제작 편성규제 개선 등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규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외주제작시장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편성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함.

한편, 프로그램 외주와 관련하여 방송사가 편성권을 바탕으로 외주제작사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있어 왔는바, 이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 외주와 관련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였음. 또한 개정법이 외주제작사를 명시적인 규율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상품배치광고의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방송사에 대한 협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분쟁조정의 대상에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 및 외주제작사 상호 간의 분쟁을 포함시켜 간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그 동안 규제의 범위 밖에 있던 협찬의 거래방식을 개선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등을 통해 거래되도록 하고 협찬거래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함으로써, 협찬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간의 권한 분장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징금 및 제재조치의 결정은 방송심의위원회가, 처분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주요내용

1) 방송프로그램 제작기반 강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 협찬을 허용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시장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외주제작사가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상품배치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

2) 외주제작사 성장 기반 조성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 도입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3)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 추가
-외주제작 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된 프로그램 공급기준에 대한 보완명령 가능
-공급기준 미신고, 보완명령 불이행, 공급기준과 다른 외주제작계약 체결에 대한 과태료 도입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금지행위 도입
-협찬 거래 시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등을 통해 거래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징수
-부당한 협찬 거래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 도입

라. 조문별 검토

현 행	개정안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 <신설> 22."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7의2. "외주제작사"라 함은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22.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접적•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물품•용역•인력•정보또는장소등을제공받는것을말한다. 22의2.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에게 "협찬"을 한 자(이하 "협찬주"라 한다)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취지

현행 방송법은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외주제작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주제작사를 방송법의 규율 영역에 포섭함.

또한 협찬고지는 협찬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은 협찬에 대한 정의 없이 협찬고지에 대한 정의만을 두고 있음. 협찬 자체에 대하여 방송법이 규제할 수 있도록 협찬의 정의를 규정.

현 행	개정안
제33조(심의규정)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의2. 신설>	**제33조(심의규정)**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의2. 협찬을 받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제작•편성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개정취지

상품배치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구방송법 하에서 협찬고지가 사실상 탈법적 상품배치광고로 이용되어 왔던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품 노출을 통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상품배치광고를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모두에게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품배치광고와 협찬이 각 제도 본연의 취지에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함(아래 제74조 제2항 개정안 참조). 이에 따라 개별 행위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므로,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으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

현 행	개정안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상호간에발생한방송에관한분쟁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하여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수있다

□ 개정취지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만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규정. 외주제작사를 우월적 사업자인 방송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양 자 간의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였음.

현 행	개정안
제37조	**기존 방송법 제37조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로 대체함 - 삭제**

□ 개정취지

이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개정취지 참조.

현 행	개정안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신설>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⑤ 제1항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형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현행법은 제72조에서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의무편성비율 충족 여부 판단 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내용을 명확화함.

현 행	개정안
<신설>	**제72조의2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이하 "공급

	기준"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공급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주제작사의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별 제작비 산정방법과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외주제작 계약 금액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수익, 협찬 수익, 상품배치광고 수익, 그 밖에 권리분배에 관한 사항 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급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개정취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제작사에 대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외주제작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방송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용할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공급기준의 내용을 외주제작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급기준이 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정안
제73조 (방송광고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제73조 (방송광고등)** ① 방송사업자 <u>및외주제작사</u>는방송광고와방송프로그램이혼동되지아니하도록명확하게구분하여야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⑤항 실효 (우측 개정안은 미디어랩이 존치될 것을 전제로 초안을 마련한 것임)	허용범위•시간•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품배치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서비스 등을 소품 및 배경 등으로활용하여노출시키는형태의 광고 [note: 상품배치광고의 정의는 방통위에서 광고 담당 부서와 협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정하지 않음.] ⑤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체결한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외주제작사는 제2항 제7호의 상품배치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이전에 방송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방송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상품배치광고의 계약서 및 거래의 요령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73조의2 (상품배치광고)** 제73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상품배치광고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개정취지

현행법상의 간접광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품배치광고”로 명칭을 변경함. 상품배치광고가 제작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내 광고임을 감안하여 제작주체인 외주제작사에게도 상품배치광고를 허용함. 이에 따라 방송광고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73조 제1항에 외주제작사를 주체로 포함시키고,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를 통해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상품배치광고도 지상파방송사의 광고거래 방식과 마찬가지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등을 거치도록 함(방송광고판매대행사와 관련한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한 향후의 방송법 개정에 따라 수정, 보완 필요).

현 행	개정안
제74조 (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	**제74조 (협찬 및 협찬고지)** ① 협찬및협찬고지의허용범위는방송의공공성, 방송

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기존의 제1, 2항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1항으로 규정>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협찬 및 협찬고지의시간,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note: 제74조 제1항 개정안을 전문은 1항, 후문은 2항으로 분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제2항 신설>	②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신설>	③ 방송사업자는 협찬을 받아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체결한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제1항에 의한 협찬을 받는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제73조 제0항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하여금 협찬계약(장소 및 시상품, 경품 협찬 계약 제외)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이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방송되는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의 계약서 및 거래의 요령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신설>	⑤ 제1항에 의한 협찬 또는 협찬고지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한 협찬 또는 협찬고지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개정취지

현행법은 협찬고지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받는 협찬과 협찬주를 고지하는 협찬고지는 개념상 구분되어야 함. 따라서, 개정안은 협찬 및 협찬고지에 대한 각각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협찬 자체를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모두에게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협찬 유치를 허용하여, 협찬이 프로그램 제작비의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상품배치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구방송법 하에서 협찬고지가 사실상 탈법적 상품배치광고로 이용되어 왔던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품 노출을 통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상품배치

광고를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모두에게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품배치광고와 협찬이 각 제도 본연의 취지에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현행법 하에서 협찬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탈법을 야기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거래도 광고와 마찬가지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등을 통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대한 부분은 향후 관련 입법에 따라 수정, 보완 필요함).

한편,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위반 시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현 행	개정안
제98조 (자료제출) 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 (사실조사 등)** 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게 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개정취지

협찬거래의 주체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권 행사의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시켰음.

현 행	개정안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 또는 이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제2항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 3항은 제3, 4항으로 수정 이동)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시청자에 대한 사과 2.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주의 또는 경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또는 이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또는제재조치가해당방송프로그램의출연자로인하여이루어진경우해당방송사업자는방송출연자에대하여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와 병과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5항 삭제>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의2, 3, 4 신설> <10의2. 신설>	**제10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의2.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72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9의4.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을 받은

11.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자 11.제74조 제1항의 시간, 횟수, 방법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외주제작사가 요청한 방식에 따라 협찬고지를 한 경우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모두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개정취지

현행 방송법은 (i)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고, (ii) 협찬고지의 방법상 위반의 경우 및 (iii) 내용상 위반의 경우에는 모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 중지, 관련자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과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i)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자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찬고지 제도의 인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법적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크므로, 법상 인정된 허용범위를 위반하여 협찬을 유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과징금을 통하여 박탈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유인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협찬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협찬 및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태료를 통한 제재 대신 협찬 수익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ii) 단순히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재조치인 과태료를 통하여 처벌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만을 제재조치로 규정하였음. (iii) 위법한 협찬을 통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탈법행위는 이를 방치할 경우 상품배치광고와 협찬 및 협찬고지의 제도 취지를 불명확하게 하고 협찬고지가 상품배치광고에 관한 규제를 탈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보다 높은 수위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 중지, 관련자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방송법 외 법률의 개정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현 행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5조 (기금의 조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5조 (기금의 조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로부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동사업자의방송광고매출액및협찬액의 100분의 6의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외주제작사의 방송광고매출액 및 협찬액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상품배치광고 판매분 및 협찬액(장소, 경품 및 시상품 협찬은 제외)에 한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 등에 따라 분담금을납부할자별로그징수율을차등책정할 수있다.

□ 개정취지

방송법 제37조의 방송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로 대체함. 광고와 협찬고지는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영리적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따라서, 협찬에 대해서도 공공재적 성격인 전파의 사용에 대한 이익의 대가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외주제작사의 상품배치광고의 판매가 허용된 만큼 외주제작사의 상품배치광고 판매시에도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사업자 의견 반영 수정안 검토

현 행	개정안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 <신설> 22."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7의2. "외주제작사"라 함은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22.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 직접적 •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 물품 • 용역 • 인력 • 정보또는장소등을제공받는것을말한다. 22의2.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에게 "협찬"을 한 자(이하 "협찬주"라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다)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상호간에발생한방송에관한분쟁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하여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둘수있다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신설>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⑤ 제1항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형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te: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외주인정기준이 negative 방식인 경우에는 제73조의2(상품배치광고)에서 positive 방식으로 "제작 주체 결정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설>	제72조의2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공급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주제작사의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별 제작비 산정방법과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익, 그 밖에 권리분배에 관한 사항 4.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Note: 외주제작사에 의견 확인 요함.]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급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Note: 제작비 등 외주제작계약 시 특약사항들과

	관련하여 본 신설조문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외주제작사에 확인을 요함.]
제73조 (방송광고등)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 시간 • 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제73조 (방송광고등)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 시간 • 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품배치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서비스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신설>	제73조의2 (상품배치광고) ① 제7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상품배치광고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안 1) ② 제1항의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기준은 외주제작사가 당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te: 위 2항은 외주인정기준을 negative 방식으로 정할 경우 필요한 조항으로서, 대통령령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준을 positive 방식으로 규정하게 될 것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음. *외주제작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3] 이상(3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을 담당한 방송프로그램은 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본다. 1. 작가 및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2.제작비의 집행 관리 3.프로그램의 연출 4.(기타 사항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안 2) ② 제1항의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기준은 제72조 제5항에 따른다. [Note: 외주인정기준이 positive 방식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상품배치광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인정기준도 그에 따르도록 함.] ③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사가 상품배치광고를 하는 데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외주제작사의 상품배치광고 유치를 방해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 2.외주제작사가 그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상품배치광고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을 거부하는 행위

제74조 (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기존의 제1, 2항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1항으로 규정> <제2항 신설> <제3항 신설> <제4항 신설>	제74조 (협찬 및 협찬고지) 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는 방송의 공공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 및 협찬, 협찬고지의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협찬을 받아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협찬 또는 협찬고지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한 협찬 또는 협찬고지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단,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에는 방송사업자의 협찬 및 상품배치광고 계약 내역, 당해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협찬 및 상품배치광고 계약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u>
제98조 (자료제출) 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 (사실조사 등) 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u>또는외주제작사</u>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 수있다.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100조(제재조치 등) <u>방송통신심의위원회</u>는제33조의 심의규정 및 <u>제74조 제3항에 의한 협찬고지규칙 중 제74조 제2항에 관한 규정</u>(이하 "심의규정 등"이라 한다)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u>외주제작사에게</u>다음각호의제재조치또는이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제2항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 3항은 제3, 4항으로 수정 이동)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결정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거나다음각호의제재조치를명하여야한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시청자에 대한 사과 2.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주의 또는 경고 [Note: 기존에 제안한 안은 방통위의 협찬고지 규칙에는 협찬고지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광고효과유무와 같은 내용 심의 관련사항은 심의위의 심의규정으로 분리하여, 심의위가 심의규정 위반을 심의하고, 그와 같은 심의에서 협찬, 협찬고지의 광고효과유무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 현재 방송법 구조와 같이 귀 위원회의 협찬고지규칙에 광고효과유무와 같은 내용 심의 규정과 협찬고지 방법 규제를 모두 두고, 심의위가 그 위반여부만을 심의하여,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외주제작사가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2호, 3호, 4호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주제작사에 대한 제재조치와 방송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위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외주제작프로그램이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사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향후 방송사가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하여 적정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으므로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또는 이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

	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와 병과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5항 삭제>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의2, 3, 4 신설> 11.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제10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의2.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72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9의4.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제정되는 협찬고지규칙 가운데 시간, 횟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외주제작사가 요청한 방식에 따라 협찬고지를 한 경우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모두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Note: 협찬고지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주제작사, 방송사업자를 모두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사업자 의견 검토

1. 지상파 방송사 의견 검토

개정내용	A	B	C
제2조 '외주제작사' 및 '협찬' 용어 정의 규정 신설	- 외주제작사의 방송법상 지위 확보 및 협찬 개념의 정립을 위한 필요성 인정,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별도 의견 없음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 대상에의 외주제작사 포함	-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별도 의견 없음
제72조의2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기준 및 신고 규정 도입			
① 공급기준에 대한 방통위 지정 기관과의 협의 및 방통위 신고 규정	- 별도 의견 없음	- 협의 대상으로서 제작사협회 등 방통위 지정 기관이 모든 **외주제작사를 포괄하지 못하여 그 대표성 미약** · 방송사업자와 지정기관과의 협의된 공급기준 내용을 개별 외주제작사에게 준수할 것을 강제할 실효성 확보 문제 · 또한 사적 거래의 내용을 그 상대방에게 노출, 방송사업자의 계약 협상력 약화 문제 야기, **지정기관과의 협의 규정 삭제 필요**	- 협의 대상으로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기관이 모든 외주제작사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1,500개가 넘는 외주제작사를 대표할 기관으로 어떤 기관을 방통위에서 지정할지 의문 · **방통위 지정기관과의 협의 부분 삭제 및 방송사업자의 공급기준 신고만을 규정,** 사후적 공정거래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공급기준 수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
	[Note: "공급기준"은 외주제작사와 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기준이 됨. 그런데, 개별 외주사는 방송사에 비하여 규모나 계약상 지위에서 열세에 있어 공급기준의 결정을 개별 협상에 맡겨 두는 경우, 방송사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급기준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방송법이 공급기준을 도입한 취지가 몰각됨. 이를		

개정내용	A	B	C
	방지하기 위하여 협상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방송사와 협상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모든 외주사가 그 기관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 협상 대상 기관과 협상하여 도출된 공급기준은 개별 외주사와 협상하여 도출된 것보다 전반적으로 공정성을 가진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대상 기관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협상 대상 기관은 이와 같은 성격의 공급기준을 설정하는 데 적합하다면, 반드시 모든 외주사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아울러 다른 법률을 보더라도 일정 사업 분야에서 상당수의 사업자가 가입한 사업자단체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단체로서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이고,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의미하는데, 두 단체에게 각자 일정한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각 단체의 설립요건에 전체 소비자 또는 사업자를 대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그 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각종 법이 있는데, 특별히 전체 사업자를 대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전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 전원에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노동조합법 제35조).]		
② 공급기준의 포함 내용		- 방송의 공적기능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작 계약은 사경제 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사후적·간접적인 감독 기능에 국한되어야 함.** 따라서 **공급기준에 포함될 내용 및 절차를 최소화** 해야 함	- 제작요소의 수준, 투입기간 및 그 물량, 장르 및 소재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주제작 계약을 하나의 공급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
	-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 '제작비' 보다는 양측의 계약	

개정내용	A	B	C
	지급하는 것은 제작비가 아니라 외주계약 금액(외주비), 따라서 '제작비'가 아니라 **'외주 계약금액' 이라는 용어가 적합**	에 의한 지급액으로서 **'외주계약금액'이라는 용어가 적합**	
	- 제작비의 경우, 같은 항목(출연료, 작가비 등)이라도 프로그램의 종류 · 난이도 · 품질 등에 따라 다양, 이를 공급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주요 항목별 제작비 산정 방법에 있어** 제작요소의 수준, 투입기간 및 그 물량, 장르 및 소재, 예상 흥행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표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이를 명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제한임**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준만 법에 규정, 구체적 사항은 계약에 따르도록 하여 계약의 자유 존중** · '주요 항목별 제작비 산정 방법'은 경우에 따라 매우 다양, 하나의 공급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
	- '투명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출연자 및 스태프 등에 대한 그 보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이는 **제작의 실질적 주체인 외주제작사와 배우 및 스태프 간의 관계 문제로 이를 방송사업자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	- 외주제작 금액의 집행 문제 또한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외주제작사가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송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공급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	- **외주제작 계약 금액의 투명한 집행은 외주제작사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지 방송사업자와의 공급기준에 포함될 문제 아님**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은 외주사의 역량 및 프로그램별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 이를 현실적으로 명시적인 공급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은 무리**	-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해당 외주제작사의 능력에 따라 매우 다양, 방송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공급기준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부적절**	
	[Note: ① 제작비를 외주제작 계약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② 외주제작 계약 금액의 투명한 집행이라 함은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계약금액을 지급,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개정내용	A	B	C
	한다는 취지이므로, 방송사 지적사항은 부당함. 다만, 방송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규정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작비의 경우 사안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방송사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음. 그러나, 제작비 분배 기준을 미리 정해 둠으로써 방송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작비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작비 산정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규정 취지임. 특히, 제작비 부분이 공급기준의 핵심 요소이므로 그 산정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공급 기준에 규정해 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각 제작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각 요소에 대한 기여도별 제작비 분배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은 수준으로도 제작비 분배 기준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는 외주제작사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③ 공급기준의 준수 및 그 내용을 계약에 포함해야 할 의무 ④ 방통위의 요건 불충족 판단시 보완명령	- 공급기준에 대한 보완명령은 **규제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큼**	- **방통위가 보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공급기준 포함 내용의 단순 누락으로 한정 또는 제4항 삭제를 통해 규제기관의 자의적 판단 위험성 차단**	
	[Note: 이미 방통위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보완명령은 형식적 사항 불비 시 이루어지게 되므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방통위는 공급기준에 법이 정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였는지 확인하고, 특정 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충분하게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완명령을 하게 될 것임.]		
제73조 '간접광고' 명칭 변경 및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 **공동제작이 대부분인 외주제작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판매주체에 대한 문제 발생** 우려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가능 근거는 마련해 주되, 계약 주체 및 방법 등은 사업자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외주사의 무분별한 간접**	- 현 방송법상 상품배치광고는 방송광고로서 광고송출의 주체인 방송사업자만이 가능 · 따라서 **상품배치광고는 방송사업자가 하고 외주제작사는 광고유치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가 바람직** - 상품배치광고는 시행령 등	- 외주제작사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외주제작사의 독립적 간접광고 허용은 현 방송법상 광고 주체인 방송사업자의 광고를 외주제작사가 판매하는 문제 있음 -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광고 판매가 가능한데 비해, 외주제작사에게 직접 광고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 야기

개정내용	A	B	C
	광고 유치 및 발생 문제에 따른 사후 책임을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 방송사업자가 간접광고 편성을 포함한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법적 보완 필요	을 통해 그 범위 및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며 또한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임 · **상품배치광고의 영업방식, 외주사 주관 범위,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이 먼저 명확히 검토되어야 함** - 상품배치광고는 재방송 및 이후 국내 및 해외 판매시에도 광고효과가 유지되어, 기존 프로그램 광고주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전체 광고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검토 선행이 필요	- 대부분의 외주제작물이 공동제작인 현 상황에서 외주제작사들에게도 간접광고 판매가 허용되면 간접광고의 판매주체가 불명확해 혼란 우려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영업 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계약주체, 방법 등은 다양한 외주제작 상황에 맞도록 자유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이 없음에도 사업자 간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 · 재산권 · 시장경제원리 등의 침해 우려 있음** -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 판매는 방송사업자 영업행위의 핵심으로 그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Note: 간접광고의 재방송, 해외 판매시에도 광고효과가 유지됨으로써 광고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은 간접광고 그 자체에 내재된 문제로서, 간접광고가 이미 합법적인 광고 수단으로 도입된 현 시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협찬광고와 마찬가지로 방송 광고를 반드시 방송사업자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는바, 방송시장 제작 환경 개선, 외주제작사 육성, 방송사의 제작 능력 제고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기관이 정책적으로 그 주체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함.		

개정내용	A	B	C
	또한, 간접광고의 경우 최종적인 송출은 방송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간접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제작자에 의하여 이루어짐. 따라서,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를 불문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가 간접광고의 배치 및 노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자가 간접광고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취득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고 간접광고에 관한 각종 규제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함.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제작자가 간접광고를 직접 유치하고 그 계약의 체결을 광고주와 직접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한편, 간접광고의 계약체결 방식을 대행사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가할 것임. 또한, 간접광고의 방식에 관하여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그러한 규제가 간접광고를 유치한 제작자에게 직접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유치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외주제작사에 의하여)위법하고 무분별한 간접광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제작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제작주체 결정 기준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문제로서 외주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제작 주체를 결정하거나 기타의 기준을 만들 것임.]		
제74조 ① ② ③ 협찬의 프로그램 광고효과 금지 및 협찬고지 의무화	- 협찬고지 의무화는 외주제작사의 탈법적 협찬을 막기 위한 조치, 그 취지에 공감, 이견 없음	- **광고효과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자의적 해석 우려** -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협찬주가 협찬에 대한 고지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찬고지 의무화는 과잉규제의 우려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Note: 협찬과 간접광고의 영역을 확실히 분리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즉, "협찬고지"를 통한 광고효과는 협찬주 및 브랜드명 고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프로그램 내 상품 노출 등을 통한 광고효과는 간접광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따라서 협찬의 광고효과 제한 규정은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상품을 프로그램 상에 노출함으로써, 협찬을 간접광고의 탈법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것임. 제작비를 협찬하는 협찬주의 상품, 상호가 프로그램 내에 노출되거나 상표의 일부를 가리거나 연상이 가능한 명칭이나 상표로 대체하여 해당상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노출한 경우는 협찬고지가 아닌 간접광고로서, 협찬계약만을 체결하고		

개정내용	A	B	C
	그와 같이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프로그램 내 상품 노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인 방통위 규칙 또는 심의위규칙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한편, 협찬고지와 관련하여 협찬주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 것은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협찬주의 상품, 상호가 불법적으로 프로그램 내에 등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광고의 탈법수단으로 협찬고지가 이용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 협찬주 고지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규제기관이 불법적 협찬고지, 간접광고를 인지하여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한편, 협찬주가 협찬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간이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협찬계약만으로 간접광고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는 현행법에 대한 탈법 의사를 가진 경우로서 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없음. 결국, 협찬을 간접광고의 탈법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 규제를 포기할 수는 없는바, 고지의 의무화가 과잉규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제74조 ④ 협찬 및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도입	- 별도 의견 없음	- **위법한 협찬고지로 인한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산정 규정 필요(금전적 지원외의 협찬 포함)** - 또한 **위법한 협찬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법적·도의적 책임에 대한 우려.** 또한 방송평가 및 재허가 대상으로서 방송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외주제작사와의 근본적 책임 강도가 다르므로 **위반 원인이 외주사인 경우에 대해 외주사의 실질적 책임 부여 방안 검토 필요**	
	[Note: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협찬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사후에 구체적인 고시 등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됨.]		
제98조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출 요구대상자에 외주제작사 포함	- 별도 의견 없음		

개정내용	A	B	C
제108조 과태료 조항 신설 및 수정	- 미신고 시에만 과태료 부과가 타당, 계약서에의 **공급기준 미포함 및 보완명령 미이행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	- 공급기준에 따른 외주제작 계약에 있어 다양한 상황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구체적 계약 내용에 대한 수정 불가피함** · 공급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 원활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 보장을 위해 **계약에 대한 변경을 인정해야 함**. 초안의 내용은 방통위가 사적 계약의 내용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임 · 공급기준 미신고 외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급기준은 표준계약의 성격으로 구체적 계약내용은 사안마다 상이,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함. 특정 경우 공급기준을 계약서에 반영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발생 - 과태료 공급기준의 미신고 외에 다른 과태료 부과 사항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
	[Note: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령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임. 공급기준을 도입한 이상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은 계약 체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피할 수 없음. 보완명령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이의 보완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모호하다고 할 수 없음. 아울러, 보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보완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공급기준 제출 자체가 유명무실한 요식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공급기준과 다른 예외적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와 같은 예외적 사유 자체를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급기준에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임.]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 금지행위 도입	- 별도 의견 없음	- 초안에 예시된 금지행위의 경우 상당 부분에 '부당'이라는 용어가 사용,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며 중대한 선의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내포 · **방송영역의 공정한 계약에 대해 현 공정거래법**	- 문방위 계류 법안은 금지행위 대상을 '시청자의 이익 저해 또는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 **직접적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금지행위 중지 및 계약조항 삭제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 ·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개정내용	A	B	C
		을 통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한 바, 방송법에서까지 이를 규정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 불필요	원칙에 위반, 행적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 또한 행정행위 이후 금지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사업자의 손해를 돌이킬 수 없으므로 달성가능한 공익보다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이 큼
	[Note: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반 규제와 방송법에 의한 전문 규제가 병행되는 것은 큰 문제없으며, 비교법상으로나 국내 규제입법상으로도 많이 발견됨. 한편, 시청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 입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모델로 한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서 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경우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즉, "시청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 시청자 이익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행위유형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검토

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의 임의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서 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기구 중 하나에 불과함.

나. 분쟁 성격의 복합성

저작권 관련 분쟁이라 하더라도 방송관련 저작권 분쟁은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산업의 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저작권 분쟁 중에서도 방송 관련 저작권 분쟁은 방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함. 분쟁해결기구의 선택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당사자는 해당 분쟁의 성격에 따라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선택할 수 있음.

다. 타 법률에 대한 분석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면서(제37조), 해결 분쟁영역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각종 법률은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예: 발명진흥법 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수), 특히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분쟁은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지만,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다른 방식의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인바, 분쟁의 성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를 두는 것은 분쟁 당사자의 선택권 확대 면에서도 바람직함.

라. 소결

결국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방송에 관한 분쟁에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분쟁 당사자는 분쟁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 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방송법 상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애초에 탄력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입법된 이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취지에도 부합함.

3. 외주제작사 의견 검토

가. 외주제작사 정의 부분

현행 방송법 제72조에서 이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은 이에 맞추어 규정된 것임. 또한, 방송법 제72조 제2항은 외주 프로그램 편성에서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규제하고 있는바, 현행 방송법상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정되어 있음. 따라서, 정의규정에서는 "외주제작사"를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어느 범위의 외주제작사를 보호할 것인가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자료제출요구 대상 부분

자료제출과 사업자의 승인 또는 등록이 반드시 연관된다고 볼 수 없음. 등록 또는 승인 대상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해당법 상 권리와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감독기관이 그 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특히 개정 방송법에 의하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간접광고 거래 등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자료제출 등을 통해 이를 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등 각종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실현"이라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반 기업에 대하여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마찬가지로 방송법

개정안은 외주제작사에게 방송법 상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방송법 상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외주제작사를 방통위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상 등록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특히, 이와 같은 자료제출요구권은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사될 수도 있으므로, 외주제작사의 권익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제4절 간접광고 및 협찬거래 신고제 개정안

1. 개정안 마련의 취지

간접광고 및 협찬 거래의 경우 미디어렙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방송제작환경 상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약체결을 신고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방송법령에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되어야 할지 개정안을 연구하였다.

2. 개정안 및 의견

법 제73조 제5항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간접광고및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e:위헌 결정 이후 미디어렙과 관련한 기존 규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정될 것인지 알 수 없음. 다만 기존 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광고는 미디어렙을 통하도록 하고 간접광고만 방통위 신고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서의 예외 조항에 간접광고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신설>

법 제73조 제6항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체결한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제2항 제7호의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 간접광고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서 및 거래의 요령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이전에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법 제74조 제X항(제74조 협찬 관련 개정안의 전체 조, 항 순번에 따름)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체결한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제1항에 의한 협찬을 받는 경우 협찬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서 및 거래의 요령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이전에 협찬고지를 할 방송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1. 전광판방송사업자 관련

현 행	개정안
제59조(방송광고)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생략)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제59조(방송광고)**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생략)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Note: 영 제59조 제3항 본문에 이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안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정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부분과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음.

다만 옥외광고물관리법 기존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영 제59조 제4항은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방송사업자"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였음.

위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이 의뢰하는 공익광고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공익광고는 위 비율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됨. 이미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15조 제4항 제2호는 "광고물등에 타사광고를 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각 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의뢰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이 될 경우, 의무비율에

포함되는 공익광고의 범위가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좁아지게 됨.]

2.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관련

현 행	개정안
제59조(방송광고)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제59조(방송광고)**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⑤ **제4항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라함은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광고를 제작한 자로부터 방송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방송에 필요한 실제 비용만을 지급 받는 등 광고를 방송하는 데 따른 수익을 얻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를 말한다.**

[Note: 기존 안은 "무료 또는 법 제73조의 토막광고 단가 이하를 적용하는 공익광고"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로 규정하였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주체는 방송사업자임.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서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보통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이해함. 그렇다면 방송사업자가 광고를 방송하는 데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 받지 않거나, 지급 받더라도 방송에 필요한 실비 수준에서 지급 받음으로써, 공익광고를 방송하는 데 있어서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토막광고의 단가가 방송프로그램광고 단가 보다 낮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를 시행령 법문에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토막광고 단가는 결국 방송사업자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므로, 여전히 영리목적으로 방송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제6절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해석 관련 자문에 대한 검토 의견

1. 방송법령 상 협찬 대상인 시상품 또는 경품의 범위

가. 검토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8조 제5항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고지 시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고 협찬고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상품의 협찬 및 협찬고지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1)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의 "시상품 또는 경품"에 "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상금이 포함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공익적 목적의 퀴즈 프로그램 및 유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금 및 장학금 명목으로 현금협찬을 받을 경우 협찬주명 및 시상품을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검토 의견

(1) "시상품 또는 경품"의 의미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공익성 캠페인,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에 협찬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경우에는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 제한된 범위에서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법령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시상품 또는 경품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사전적 의미를 기초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상품 또는 경품의 사전적 의미는 상으로 주거나, 추첨을 통해 주는 물품이므로, 여기에는 현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규칙 제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및 제50조(시상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 규정 개정 등으로 조 변경) 제1항은 "출연자, 방청인 및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은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상품에 상금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상품 또는 경품에는 "상품"뿐 아니라 "시상금 또는 장학금" 등 "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익성 캠페인, 공익성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 공익행사 외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협찬의 경우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방송법령상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제한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방송프로그램 제작 경비를 협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시상품 또는 경품의 범위에 "상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협찬 받은 상금은 독립한 "물품"으로서 시상품 또는 경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방송사업자가 제작경비로 사용하거나 현금을 협찬받은 후 이를 경비로 다른 물품을 구입하여 시상품 또는 경품으로 사용하는 등 시상품, 경품으로서 협찬받은 상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행 방송법령의 해석상 방송사업자는 시상품 또는 경품으로서 현금을 협찬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협찬받은 현금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시상품이나 경품으로 시청자, 출연자 등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제작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다른 물품을 구입하여 시상품, 경품, 제작 소품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방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상품 협찬의 범위와 협찬고지의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상품 또는 경품의 범위에는 “상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협찬주가 시상품 또는 경품으로 상금을 협찬한 경우, 방송사업자는 규칙 제8조 제5항 각호에 따라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협찬고지는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 받는 방송프로그램은 반드시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협찬을 받는 주체도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방송법 시행령 개정 후, 협찬고지 규칙 개정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검토

가. 검토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방송법 제74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 협찬(제1호),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 협찬(제2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 제외)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제3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공익성이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의 제작 협찬(제3호의2),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시상품, 경품 제공 및 장소·의상·소품·정보 등 협찬(제4호)의 경우 협찬고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귀 위원회는 시행령 제60조 제1항 중 제3호의2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개정안) 제60조 제1항 제3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국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위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KBS, MBC, SBS(이하 '방송3사')의 경우 귀 위원회의 협찬고지규칙(이하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제작협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가 규칙에 제작협찬 허용범위를 규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범위에서 제작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관련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위 사업자들은 모든 제작협찬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행 시행령 제3호의2가 삭제될 경우, 규칙에 제작협찬 허용범위가 규정되기 전까지 방송3사는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제작협찬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귀 위원회는 향후 규칙 개정 시 방송3사에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의 제작협찬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귀 위원회는 규칙 개정 전까지 방송3사가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작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인바, 귀 위원회는 이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나. 검토 의견

(1)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성격

방송법 제10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고, 제11호에서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할 경우, 귀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108조 제1항의 문언 상,

귀 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위원회는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위반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108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현행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2를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경우 방송3사가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귀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 발효 이후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에 협찬고지를 한 방송3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귀 위원회는 근시일 내에 방송3사에 대하여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므로, 이와 같이 사실상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바, 이하에서 살펴봅니다.

(2)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위법 여부

가) 규칙 개정 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가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귀 위원회는 시행령과 함께 규칙도 개정하여, 방송3사로 하여금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바, 규칙 개정 전에 이루어진 대형기획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고지 행위에 대하여 규칙 개정 이후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앞서 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는 본 사안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한 협찬고지 허용범위의 변경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법률의 개정"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74조 제1항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안은 다시 그 허용범위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위반 여부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시행령 및 규칙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방송법 제7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그 규제 내용을 구성하는 시행령 및 규칙의 변경 역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역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과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구성요건의 일부가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되는 경우, 이와 같은 명령 또는 고시의 변경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인바,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귀 위원회가 규칙을 개정하여, 방송3사의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 협찬고지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2제2항에 의하여 규칙 개정 전 방송3사의 협찬고지 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귀 위원회는 규칙 개정 전 이루어진 방송3사의 공익성 캠페인에 대한 협찬고지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규칙 개정 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한편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방송3사의 공익성캠페인에 대한 협찬고지가 있는 경우, 귀 위원회가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규칙의 개정 및 발효시까지 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은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108조는 과태료 처분을 위반 행위 발견 즉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랜 기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① 개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작 협찬을 허용하되, 방송3사에 대해서만 규칙에 의하여 허용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② 시행령에 의하여 귀 위원회는 규칙 제정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와 같이 행정청이 법규명령의 내용을 이루는 행정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수범자에게 준수하여야 할 법규명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을 수범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③ 무엇보다 귀 위원회는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고지를 허용할 계획이므로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이루어진 대형기획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고지는 사실상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규칙 개정 전에 귀 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귀 위원회가 규칙 개정 전에 방송3사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이 개정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협찬고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규칙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본건의 경우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후 규칙 개정 전 방송3사의 공익성 있는 대형기획프로그램 협찬고지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편성고시 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관련 외주제작사 범위 한정의 위법 여부 검토

가. 검토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귀 위원회는 방송법(이하 "법")을 개정하여 외주제작사의 정의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외주제작사의 범위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화부의 안을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 제58조 제5항 에 따라 고시하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영하고

자 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고시") 제13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① 제8조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이거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중 3가지 이상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1. 외주제작사가 작가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2. 외주제작사가 주요 출연자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3. 외주제작사가 주요 스태프 중 2 분야 이상의 책임자와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4. 외주제작사가 협찬 유치 또는 계약 등을 통해 제작비의 30% 이상을 조달하는 경우
5. 외주제작사가 제작비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이하 "본건 고시안")를 제정, 시행하는 경우, 법 제72조 제1항 및 영 제58조와는 달리 "방송사업자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만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로 한정되게 되는바, 귀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고시가 위법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였습니다.

나. 검토 의견

(1) 외주제작사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방송법령의 체계

법 제72조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상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모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송법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정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방송법에 "외주제작사라 함은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외주제작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법 제72조나 신설될 방송법 규정은 모두 외주제작사 및 외주제작프로그램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법 제72조 및 영 제5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하는바, 최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58조 제5항에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귀 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위원회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편성고시 규정안의 위법여부

가)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한 문제

본건 고시안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상 의무편성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편성하여야 하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성고시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제정을 위임하고 있는 영 제58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즉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제1항 내지 제5항), 이와 같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특별한 제약 없이 귀 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습니다(제5항).

그렇다면, 비록 방송법과 시행령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를 방송사업자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제정이 귀 위원회의 고시로 특별한 기준 없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귀 위원회가 제작 주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법규의 일부 내용을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위임입법을 하는 경우 하위법규에서 법률상의 기본권 제한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10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영 제58조 제5항에 따른 귀 위원회의 고시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축소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편성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가 더욱 축소되어,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가 더욱 제약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물론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은 성질상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송프로그램만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 제72조, 영 제58조의 규정 취지 및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은 외주제작의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는 당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과 다름 없는 방송프로그램이 의무편성비율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한 법 제72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를 방송사업자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법의 규정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을 통해 고시에 규정되리라고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방송사업자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이 제작한 경우로 축소하는 본건 고시안은 상위법이 예정한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상위법의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강화한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법령의 체계상 문제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은 외주제작사의 개념을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방송법 제72조상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정의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령상 당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고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는 누구나 외주제작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고시에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충족하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축소하면, 이와 같은 방송법령 전체의 외주제작사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개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위규정에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소하는 경우, 방송법 상 외주제작사, 외주제작의 개념과 편성고시 상 외주제작사, 외주제작의 개념이 전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축소하는 편성고시안은 방송법령의 체계 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의무편성비율 입법취지와 관련한 문제

방송법이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한 취지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의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아닌 프로그램 제작자, 즉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하여 방송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편성비율에 포함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등록을 마친 문화산업진흥회사나 신고를 마친 독립제작사로 제한하게 되면, 위 의무편성비율 규제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제작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등록 또는 신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바, 외주제작사의 제작능력 배양이라는 방송법상 의무편성비율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시에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진입규제를 통과한 외주제작사만 의무편성비율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소규모 또는 영세 외주제작사업자를 완전히 동 규정의 보호범위 밖에 두게 되고, 따라서 이들 소규모 제작사의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도가 사전에 차단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아울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독립제작사의 신고 요건 등은 동법상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방송법상 의무편성비율에 포함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제작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으로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의무편성비율에 포함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문화산업진흥회사 등으로 제한

하는 고시안은 모법인 방송법이 의무편성비율을 도입한 당초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과징금·과태료 제도 관련 법령 개선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의 권한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시마다 제재처분 결정 권한이 어느 기관에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협찬 및 간접광고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에 따른 심의 및 제재 관련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제2절 협찬고지 관련 규칙 심의권 및 제·개정권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의견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방통위설치법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호 신설>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방통위설치법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3.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과징금부과및제재조치등에대한심의·의결
방통위설치법제24조 (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호 신설>~~ (삭제) <기존 제24조 제2호는 제3호로 변경> 2.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	**방통위설치법 제24조 (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방송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심의에 관한 규정~~ – 3.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

에 관한 심의규정	에 관한 심의규정
방통위설치법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다음 각호의어느하나의제재조치등을정할수있다. 1.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방통위설치법 제25조(제재조치 등)**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 및 **방송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에관한규칙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다음 각호의어느하나의제재조치등을정할수있다. 1.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정한때에는위원회에지체없이그처분을할것을요청하여야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또는제재조치의처분을요청받은때에는「방송법」 또는「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업자등에대하여그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2. 개정취지

기본적으로 현행틀을 유지하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찬고지규칙 관련 심의권을 주고(의결권은 제21조 제3호에 의해서 가능), 규칙의 제・개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로 남기고자 함.

제3절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1. 방송법

현 행	개정안	비 고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25. (생 략)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5. (현행과 같음) 26. "방송내용정보"란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방송언어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한선교 의원 원안】 26. "방송물내용정보"(이하 "내용정보"라 한다)란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사행성**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 그 밖에 방송물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Note: 개정안 제33조 제3항 이하를 보면, 등급분류와 방송내용정보가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등급분류의 경우 표현 자체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분류의 기준은 제33조 제3항에 제시되어 있으나, "방송내용정보"는 용어 자체만으로 의미를 알기 어려움. 따라서 이와 같이 정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제3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제33조 제3항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방송언어 등에	□ **문제점** o 방송 내용정보 표시제 부재로 방송내용(선정성・폭력성・방송언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시청지도 곤란 □ **참고사례**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게임물내용정보를 규정하고, 그 표시를 의무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3조(표시의무)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o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은 유해정도의 기준을 "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으

현 행	개정안	비 고
	관한 정보(이하 "방송내용정보"라 한다)와 함께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제33조 개정안이 "방송내용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정의규정의 용어를 재차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 정의규정 중 괄호 안의 '이하 "내용정보"라 한다'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기본원칙) ①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o 방송물내용정보를 제2조 정의조항에 규정하고, 그 표시를 의무화하여,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시청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유해정도의 기준이 되는 "폭력성・선정성・방송언어"를 방송물내용정보로 정의 **※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8조제1항제3호 연계 개정**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전기통신화선을역무를 이용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시키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 문제점** o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방송과 유사한 정보(이하 "유사방송")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근거 부재 - 방송법령은 유사방송을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로 한정 -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웹캐스팅을 통해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을 광고로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 발생 **【지상파방송 인터넷 운영 자회사의 최대주주 현황】**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h>비 고</th></tr>
<tr><td></td><td>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Note :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3G망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모두 심의대상으로 하였음]</td><td>
<table>
<tr><th></th><th>서비스제공자
(URL소유자)</th><th>방송사 지분율</th></tr>
<tr><td>KBS</td><td>KBS</td><td></td></tr>
<tr><td>MBC</td><td>iMBC</td><td>58.13%</td></tr>
<tr><td>SBS</td><td>SBS콘텐츠허브</td><td>64.99%
(SBS미디어홀딩스 지분)</td></tr>
<tr><td>EBS</td><td>EBS</td><td></td></tr>
</table>
※ SBS미디어홀딩스는 SBS의 지분 33.05% 보유

□ 관련 규정

o 방송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td></tr>
</table>

현 행	개정안	비 고
		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

현 행	개정안	비 고
		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⑤ 제4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h>비 고</th></tr>
<tr><td></td><td></td><td>조의2제1항제1호, 제52조의3제2항제2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1항제4호, 제52조의6제2항 본문, 제52조의7제2호,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개선방안

o 유사방송의 서비스 주체에 방송사업자 등의 특수관계자를 포함시키고, 이를 방송법에 명시함으로써, 유사방송 규제의 실효성 확보

※ 향후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제32조”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명시 필요</td></tr>
<tr><td>제33조(심의규정) ① (생 략)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 략)
13.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4. ~ 15. (생 략)</td><td>제33조(심의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2. (현행과 같음)
13. ----------품목 또는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14. ~ 15. (현행과 같음)
[Note: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방송광고에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송광고”만 있다면 이와 같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내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호를 신설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별도의 호를 두는 경우 제86조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문구</td><td>□ 문제점

o 부당광고에 대한 방통위(과태료<제86조>)와 심의위(제재조치 또는 과징금<제100조>)의 중복규제 가능성 존재

o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은 모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적인 금전 부담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그 불복절차도 서로 상이하여 이중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

【과태료와 과징금 비교】
<table><tr><th>구 분</th><th>과태료</th><th>과징금</th></tr><tr><td>법적 효과</td><td>공정력 불인정</td><td>공정력 인정</td></tr><tr><td>부과 절차</td><td>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 행정관청이 부과 →</td><td>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 행정관청이 부과 →</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h>비 고</th></tr>
<tr><td></td><td>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13의2. 허위 ·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의 금지에 관한 사항]</td><td>
<table>
<tr><td></td><td>「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이 시원적으로 부과(이의제기)</td><td>「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이의제기시)</td></tr>
</table>
o 부당한 광고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위가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라 심의 · 제재 수행

【부당한 방송광고에 대한 연도별 제재 건수】
<table>
<tr><td></td><td>2009년</td><td>2010년</td></tr>
<tr><td>비교광고의 기준</td><td>5건</td><td>-</td></tr>
<tr><td>진실성</td><td>141건</td><td>26건</td></tr>
</table>

□ 개선방안

o 심의위가 허위 · 과장 광고를 심의 · 의결하여 방통위에 제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규정에 포함될 사항으로 명시
- 허위 · 과장 여부의 판단은 내용규제의 대상이며, 심의규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재의 탄력성(행정지도,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확보 가능
※ 제86조제2항 및 제108조제1항제20호 연계 개정
</td></tr>
<tr><td>③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視聽者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 放送중에 표시하여야 한다.</td><td>③ ----------방송내용정보와 함께 방송 중에----------.</td><td>※ 제2조제26호 개정 부분 참조</td></tr>
</table>

현 행	개정안	비 고
	[Note: '방송내용정보'에 관하여 규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제2조 제26호 개정안에 관한 note 참조 바람]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第3項의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 등급분류 및 방송내용정보와--분류기준과 표시방법 ----------.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은는----------. [Note: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음. "분류기준"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점을 고려할 때 "표시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제2조제26호 개정 부분 참조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등급 및 방송내용정보~~에 대하여~~가---------- ----등급분류 및 방송내용정보를----------.	※ 제2조제26호 개정 부분 참조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문제점 o 문리적 해석상 외국방송 재송신프로그램은 등급분류 및 표시의무 이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동・청소년보호 관련 사각지대 발생 - 현행 방송법 제33조는 방송심의규정(제1항)과 등급분류규칙(제4항)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h>비 고</th></tr>
<tr>
<td>1. ~ 6. (생 략)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td>
<td>1. ~ 6. (현행과 같음)
7. 방송 내용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의규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
③----------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심의규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Note: 위와 같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외국방송 재송신의 경우 재송신 승인 당시에만 심의규정 및 등급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하여 상시적인 규율이 이루어질 수 없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78조의2 제5항 3호의 승인 취소사유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⑤ ----------
3. 방송내용이 방송법상 심의규정, 방송통신위원회심의규칙,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td>
<td>을 구분

o 또한, 동일한 콘텐츠(예. 해외제작 애니메이션 등)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방송하는 경우와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 재송신하는 경우에 따라 「등급제규칙」의 적용여부가 달라져 규제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급제를 운용하는 대다수 국가가 프로그램 '장르'를 기준으로 등급제 적용여부를 결정】

<table>
<tr><th></th><th>호주</th><th>캐나다</th><th>프랑스</th><th>미국</th></tr>
<tr><td>적용제외</td><td>뉴스, 시사, 스포츠 등</td><td>스포츠, 뉴스, 토크쇼, 뮤직 비디오, 다큐멘터리</td><td>영화, 뉴스, 스포츠</td><td>뉴스, 스포츠</td></tr>
</table>

□ **개선방안**

o 외국방송 재송신프로그램을 「등급제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외국방송 재송신프로그램에 등급분류규칙 적용
- 등급분류 및 표시제도의 목적이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적용 필요</td>
</tr>
<tr>
<td>제86조(자체심의) ①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td>
<td>제86조(자체심의) ①----------(실시간으로 제작하여 송신하는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다)----------</td>
<td>□ **문제점**

o 방송법 상 "보도프로그램"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자체심의 제외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화가 필요
- 뉴스 외의 시사 프로그램이 보도프로</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h>비 고</th></tr>
<tr><td>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td><td>----------. ----------
②
~
③
(현행과 같음)</td><td>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

□ 개선방안

o 실시간으로 제작・송신됨에 따라 사전적인 자체심의가 불가능한 보도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문 명확화
- 녹화방송의 경우, 사전적인 자체심의가 가능하므로, 자체심의 대상에 포함</td></tr>
<tr><td><신 설></td><td>제89조의2(방송언어 교육 등) ① 정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언어 향상과 표준말 보급 등을 위하여 방송 관계자에 대하여 방송언어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 관계자의 범위, 교육 실시 방법・횟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Note: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 중앙행정기관이 여럿 있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함. 본 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언어 사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의 공개 방법・절차,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td><td>□ 문제점

o 시청률 경쟁 심화로 인해, 드라마·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방송언어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아, 우리 말의 심각한 변형·파괴 현상이 확산

【연도별 방송언어 관련 제재건수】
<table><tr><th></th><th></th><th>2008(10개월)</th><th>2009</th><th>2010</th></tr><tr><td rowspan="2">제재건수</td><td>지상파</td><td>17건 (8.1%)</td><td>28건 (13.5%)</td><td>32건 (13.1%)</td></tr><tr><td>케이블</td><td>19건(5%)</td><td>21건 (4,2%)</td><td>15건 (4.7%)</td></tr></table>
□ 참고 사례'

o 비디오물이나 게임물・게임상품의 경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가 시행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td></tr>
</table>

현 행	개정안	비 고
	로 정한다. [Note: 방송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방송언어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 의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개선방안** o △심의위와 방송사업자의 방송언어 교육, △심의위의 방송언어 사용실태 모니터 등을 의무화하고, 세부사항은 심의위 규칙으로 규정 - 방송언어 순화에 있어 전문성 가진 심의위가 방송 관계자를 직접 교육하고, 사용실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어나 제재조치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어----------. ③ (현행과 같음)	□ **문제점** o 방송이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 외에 제1항 · 제3항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나, 입법적 미비로 현행 제2항에는 미반영 - 이로 인해, 제재조치 보다 과징금의 경우가 심의규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에도 방송출연자의 과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강제 불가능

현 행	개정안	비 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래 협찬 개정안 참조>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3조의 심의규정 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 또는 이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시청자에 대한 사과 2.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 · 수정 또는 중지 3.방송편성책임자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주의 또는 경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또는 이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또는제재조치가해당방송프로그램의출연자로인하여이루어진경우해당방송사업자는방송출연자에대하여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o 심의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도 문제의 방송출연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2항 개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와 병과할 것을 정할 수 있다. [Note: 위 100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간의 권한 분장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함. 특히 협찬고지규칙 중 협찬의 내용규제에 관한 사항은 심의규정에 포함시키고 협찬고지규칙은 협찬고지의 방법규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하며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계획인바, 협찬 관련 개정 방향에 부합하도록 동 규정을 개정할 필요 있음. 또한, 제3항은 제1항보다 중대한 위반이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 외에도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제3항에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④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 ⑤항은 ⑤항, ⑥항으로 하되, 원래규정대로 복구함.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	□ **문제점** o 제100조제1항의 과징금 신설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결정사항전문 방송이나 과징금 납부 및 이행결과 보고 등의 절차가 모호 o 사유와 무관히 모든 제재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행정심판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 설> <신 설>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Note : 위 4, 5, 6항을 나누어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임]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제33조의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1항의 제재조치명령 또는 제3항의 과징금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Note: 제1항의 과징금처분을 제3항의 과징금처분과 달리 재심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행정심판 절차와 중복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른 법률에서도 행정심판 절차와 무관하게 재심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위 규정은 현행과 같이 존속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과 중복 발생 □ **개선방안** o 제재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제4항을 세분화 하여 3개 항에 규정 o 시청자불만처리나, 협찬고지 위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다투게 하고, 심의규정 위반의 경우에만 재심 허용 - 심의규정 위반의 경우, 독립적 사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처분이 이뤄지므로, 심의위가 스스로 재심결정을 하도록 조치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 설>	~~⑨~~⑥ 제1항 및 제~~3~~4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33조의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33조의 심의규정으로 정한다. [Note: 제6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찬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협찬고지규칙 중 내용규제는 심의규정으로 통합되고 방법규제만 남게 되었고, 협찬고지규칙 위반(즉, 협찬고지 방식 위반)은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 중인바, 이에 맞추어 제100조의 제재조치 및 과징금은 심의규정 위반(방송 프로그램, 광고, 협찬고지의 내용상 규제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	□ 문제점 o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의위에 과징금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심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미비 □ 개선방안 o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부과·산정기준을 방통위규칙 또는 심의규정에 정하도록 규정 - 협찬고지 및 시청자불만처리위 관련 과징금은 방통위규칙으로,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심의규정으로 각각 규정 ※ 본 사항을 제33조제2항의 심의규정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가능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기존 ⑥항은 ⑦항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함. ⑦---------- 재심이 청구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⑩~~⑧방송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재심결과를 재심이 청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 문제점 o 방통위 설치법은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심의위를 설치하였으나, 방송심의에 관한 최종결정인 재심에 대해서는 심의위의 간여 배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는 재심이 방송심의의 종국적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와 부조화 o 한편,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심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규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 설>	~~그 재심 결과를 기한 내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미비
<신 설>	[Note: 재심은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과정으로, 그 결과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재심 결정 자체는 방통위의 권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심의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 결정을 심의위가 해야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후문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제6항(개정안 기준 제7항)의 후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⑪~~⑨제~~10~~8항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의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⑩제76항에 따른 ~~재재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는 과징금부과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하되,~~ ⑪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o 또한, 재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재심기간 동안 청구인의 권리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침해 가능함에도 적절한 예방장치 미비 - 제재조치 결정시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도록 의무부과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④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o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위반과 관련한 제재조치 · 재심(집행정지 포함)

현 행	개정안	비 고
	를 정할 수 있다. [Note: 심의위가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정지 역시 행정처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⑭~~⑫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 및 재심청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심 결정의 절차 및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 심의규정으로 정한다.~~ [Note: 재심 관련 규정을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참고사례 o 현행「행정심판법」제6조제1항은 지위·성격의 독립성·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독립적으로 행정심판을 수행하도록 규정 - 이는 재심과 유사한 행정심판 제도에서 독립적으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독자적인 행정심판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o (구)방송위 심의규정과 행정심판법은 신속한 권리 구제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행정심판법은

현 행	개정안	비 고
		재결기간과 집행정지 제도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구)방송위원회】** 제67조(집행정지) ①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원심결정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0조(재심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은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현 행	개정안	비 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 행	개정안	비 고
		□ 개선방안 o 심의규정 관련 재심은 방통위 요청으로 심의위가 결정하되, 재심결과는 방통위가 통보 o 재심결정을 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 허용 o 청구인의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제도 신설 - 집행정지 여부는 재심청구의 인용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심결정을 수행하는 심의위가 담당 o 제재조치·재심 등에 관하여는 방통위규칙으로, 재심 및 집행정지 결정 절차는 심의규정으로 규정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 2의3. (생 략) 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者 4. ~ 19. (생 략)	제108조(과태료) ①----------. 1. ~ 2의3. (현행과 같음) 3. ----------등급 및 방송내용정보를---------- 4. ~ 19. (현행과 같음)	※ 제2조제26호 개정 부분 참조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	20. ---------- 아니한 자	※ 제33조 개정 부분 참조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h>비 고</th></tr>
<tr><td>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4. ~ 27. (생 략)
② ~ ⑤ (생 략)</td><td>4.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td><td></td></tr>
<tr><td>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td><td>~~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제76조의3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Note: 과징금은 제재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 수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바, 방송법상 각 과징금의 성격을 일도양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제100조의 과징금에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참작될 수 있음(협찬 관련). 또한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모든 과징금 부과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제76조의3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현행 규정대로 유지 요망]</td><td>□ 문제점

o 방송법상의 과징금은 입법목적과 법적성격이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본 조를 적용
- 그러나 제19조 및 제100조 제1항·제3항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참작이 어렵거나 불가능

※ 방송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
<table><tr><th>§19</th><th>§76의3</th><th>§100</th></tr><tr><td>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td><td>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의 과징금</td><td>행정제재적 성격의 과징금</td></tr></table>
□ 개선방안

o 제109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참작사유 조항 적용 대상을 제76조의3에 따른 과징금만으로 한정</td></tr>
</table>

2. 방통위 설치법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h>비고</th></tr>
<tr>
<td>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⑦ (생 략)</td>
<td>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td>
<td>□ 문제점

o 국회・국회의장・대통령의 추천 및 위촉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방송・통신 심의의 공백 발생

o 더구나, 현재 심의위 위원 중 6인이 ‘11. 4. 16.에 임기가 만료되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방송・통신 심의가 중단될 예정

<table>
<tr><td>임기만료일</td><td>‘11. 4. 16.</td><td>‘11. 5. 8.</td></tr>
<tr><td>위원수</td><td>6인</td><td>3인</td></tr>
</table>

□ 해외사례 등 참고사례

o (구)방송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 임명・위촉 지연에 따른 업무공백 예방을 위하여, 임기만료 위원의 임기연장 조항을 규정

【(구)방송법】

제23조(위원의 임기)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위원의 임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개선방안</td>
</tr>
</table>

현 행	개정안	비고
		o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 심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 연장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 1. (현행과 같음) 2 ·----------과징금 부과 및 제재조치 ---- 3. ~ 5. (현행과 같음) 6.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출판·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 문제점 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사항 미반영(제2호) o 심의위는 과징금을 제재조치 결정과 동일하게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직무 조항에는 미반영 - 과징금은 제재조치의 경우보다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의 핵심 직무사항에 해당 나. 심의위의 R&D 등의 직무 누락(제6호) o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에 대응하고, 품격높은 방송·통신 심의를 위해서는 조사·연구를 포함한 R&D 사업이 필요하나, 직무에서 누락 - 이러한 직무가 명시되지 않아, **매년 재정당국으로부터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며, 관련 활동에 제약 발생 o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에도 관련 사항이 직무에서 누락 - R&D 직무와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 및 관련 활동에 제약 발생 □ 해외사례 등 참고사례 o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 행	개정안	비고
		등은 R&D나 국제협력 직무를 수행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 권장·진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위원회】**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

현 행	개정안	비고
		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개선방안 o 심의위의 직무로 "조사 · 연구 · 출판 ·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을 명시
제25조(제재조치 등) ①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방송법」 제100조제1항 및 제3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현행과 같음) ② ----------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 ---------- ---------- ---------- ---------. ③ ----------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 ----------그 처 분 ---------- ------ -------. ④----------~~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표현 변경 불요)---------- ----------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외주제작사-	□ 문제점 가. 심의위의 협찬고지 관련 규제 수행(제1항) o 방송법 제74조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방통위 설치법 제25조에 반영 필요 나. 과징금 부과 절차 개선 반영(제1항 제1의2호, 제2항, 제3항 및 제5항) o 심의위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의 과징금을 심의 · 의결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방통위 설치법에 반영 필요 다. 자료제출 요구 대상 확대(제4항) o 심의위의 심의 대상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 IPTV사업자가 포함되며, 때로 방송광고주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 -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와 관련된 심의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없어 심의의 정확성 · 효율성 저해 가능 □ 해외사례 등 참고사례 가. 심의위의 협찬고지 관련 규제 수행(제1항) ※ 방송법 제74조 개정 부분 참조 나. 과징금 부과 절차 개선 반영(제1항

현 행	개정안	비고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⑤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그 처분 ----------.	제1의2호, 제2항, 제3항 및 제5항) ※ 방송법 제100조 개정 부분 참조 다. 자료제출 요구 대상 확대(제4항) o 방송심의를 전담했던 (구)방송위원회의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포괄적인 자료제출 요구권 보유 **【(구)방송법】** 제98조 (자료제출) ①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개선방안** 가. 심의위의 협찬고지 관련 규제 수행(제1항) o 제1항에 협찬고지 위반 시에도 심의위가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 나. 과징금 부과 절차 개선 반영(제1항 제1의2호, 제2항, 제3항 및 제5항) o 과징금의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결정한 경우와 동일한 부과결정 및

현 행	개정안	비고
		방통위 요청 절차를 규정 다. 자료제출 요구 대상 확대(제4항) o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 IPTV사업자 포함
<신 설>	**제6장 벌칙** 제30조(과태료)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대통령령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Note: 금융감독원은 자료제출 요구권은 가지고 있지만,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권은 없음.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은 요구권에 그칠 뿐 징계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규정이 본 과태료 규정 신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위 법안은 방통위를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심의위의 요청에 의하여 반드시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심의위의 자료제출요구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조치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함.]	□ **문제점** o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6장) - 현재는 사업자들이 심의위의 자료요구에 협조하고 있으나, 협조요청 거부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효율적인 심의 수행 곤란 □ **해외사례 등 참고사례**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민간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시정명령 · 징계 요구 등의 제재 근거를 명시 - 이 법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의 기관 설치법에 제재 ·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참고 가능 ※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따른 제재는 아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

현 행	개정안	비고
		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68조(벌칙) 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선방안 o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6장) - 심의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심의위의 요청으로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제4절 심의책임자 고지 관련 법령 개정안

1. 개정안 취지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이 지나친 자극적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방송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방송법은 자체심의제도를 통해 방송사업자 스스로 방송프로그램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 스스로 규제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심의기구 외에 자체심의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책임자의 성명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자 및 자체심의 책임자가 자체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내용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6조 제4항, 제108조 제1항 제20호의2 신설).

3.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第73條(自體審議) ①~③ (생 략)	第73條(自體審議)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08條(過怠料) ①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2.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명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21. ~ 27. (생 략)	21.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범위 관련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협찬고지규칙 등의 위반과 관련한 심의위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나.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귀 위원회는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방송법령 및 방통위 설치법 상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심의o의결이 심의위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검토의견

가. 현행 방송법 및 방통위 설치법의 해석

(1)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협찬고지가 "협찬고지규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

현행 방송법 및 방통위 설치법 상으로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협찬고지행위가 "협찬고지규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권한이 심의위에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방송법 제32조,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1호는 포괄적으로 심의위가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 공공성 및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협찬고지규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둔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협찬고지규칙"은 방송사업자에게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협찬주명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고지를 금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준수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의 직무에 포함되므로, 방송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협찬고지규칙위반 중 이와 같은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의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협찬고지부분 역시 심의위의 심의대상이 되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협찬고지규칙 중 "협찬고지의 방식"에 관한 규제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기술적 부분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및 공적 책임과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심의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협찬고지규칙" 위반의 경우 과징금 및 제재조치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을 보면, 귀 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규칙 위반 시 과징금이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바, 동 규정만을 놓고 보면,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의 결정권한은 귀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심의위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의위의 권한은 제100조 제1항 단서로 기재되어 있는바, 단서는 본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문과

단서의 내용은 상호 연관 하에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서가 본문의 예외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우선 심의위가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단서가 심의위가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의미는 "심의위가 제재조치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되,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귀 위원회는 심의위가 제재조치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명한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석 하에서도,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위가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심의위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보버라도, 심의위는 "심의규정" 위반의 경우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협찬고지규칙 위반의 경우에 대하여 제재조치,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2호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심의위의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에게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규칙" 위반의 경우에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조화로운 해석 및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2호에 의하여, "심의위가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내릴지 여부 및, 부과할 제재조치의 종류 및 수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심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2호의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과징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2호의 "제재조치 등"에 "과징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심의위가 심의·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심의위가 "협찬고지규칙" 위반 여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조치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방송법 및 방통위 설치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가 "협찬고지규칙" 중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과 관련한 기준에 관하여 방송 내용이 그러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협찬고지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심의·의결권을 보유하며,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2호의 "제재조치 등"에 과징금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도 심의·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방송법 및 방통위 설치법 상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바, 향후 심의위 권한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심의위가 "협찬고지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고, "협찬고지규칙"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며,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귀 위원회가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 자 소 개 ●

오 양 호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 현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류 광 현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미국 Duke University Shool of Law (LL.M.)
· 현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박 지 연

·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LL.M.)
· 현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박 정 은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현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지정2011-09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법령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Broadcasting Law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Programs)

2011년 12월 일 인쇄
201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O O O O